

이슈
보고서

2021

06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중단 리스크 관리에 대한 연구

한상용·문혜정

머리말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영업금지나 단축과 같은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제적 손실의 보상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 지원, 저금리 대출 등 금융지원사업과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을 시행해 왔으나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을 정책자금을 통해 무한정으로 보상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한편, 보험회사들은 사고 발생의 예측 불가능성과 피해범위의 광범위성으로 인해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현재 해외 주요국들은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이 초래하는 기업의 영업중단 손실을 국가의 지원 없이 민영 보험회사들이 단독으로 충분한 보상을 제공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정부와 보험회사 간의 공·사협력을 통해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중단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배경과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한 영업중단 손실보장을 위한 해외 주요국의 공·사협력과 관련한 논의 배경, 전개 및 발전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에서 팬데믹 영업중단 리스크 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보고서가 논의하고 있는 해외사례들과 이를 기반으로 한 제언들이 향후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의 영업중단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사협력체계를 마련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2021년 4월

보험연구원 원장 안 철 경



목 차

• 요약	1
I. 연구 배경	2
II. 국내 현황	4
1.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4
2. 정부 소상공인 지원사업	8
3. 소상공인 대상 영업중단 리스크 보장가능성 검토	11
III. 주요국의 영업중단 리스크 관리 현황	19
1. 미국	19
2. 유럽	39
3. 소결	53
IV. 팬데믹 영업중단 보장을 위한 방안	57
1. 정부제공 팬데믹 영업중단보험	57
2. 공·사협력 팬데믹 영업중단보험	58
3. 패러매트릭 보험(Parametric Insurance)	60
4. 팬데믹 채권(Pandemic Bond)	64
5. 소결	66
V. 요약 및 결론	69
• 참고문헌	73

표 차례

〈표 II-1〉 2020년 분기별 서비스업 생산지수 및 증감률	6
〈표 II-2〉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9
〈표 II-3〉 감염병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제도에 대한 논의	10
〈표 II-4〉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주요 업종의 소상공인 연평균 매출액 현황	12
〈표 II-5〉 주요 서비스 업종의 영업중단 손실액 규모 추정(1년 휴업 가정)	13
〈표 II-6〉 주요 서비스 업종의 영업중단 손실액 규모 추정(휴업기간별)	14
〈표 II-7〉 주요 서비스 업종의 영업중단 손실액 규모 추정(매출액 48.5% 감소 가정)	15
〈표 II-8〉 재산종합보험 연도별·담보별 계약 현황	17
〈표 III-1〉 기업휴지보험을 통한 팬데믹 리스크 관리에 대한 설문조사	21
〈표 III-2〉 미국 손해보험협회(APCIA)의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손실 추정	23
〈표 III-3〉 보험부보가 가능한 리스크와 전염병으로 인한 영업중단 손실	24
〈표 III-4〉 미국 각 주에서 제안된 기업휴지보험을 통한 보상에 대한 법안	27
〈표 III-5〉 Zurich 선택형 재보험 구조	37
〈표 III-6〉 미국의 팬데믹 리스크를 보장하는 보험 프로그램 제안 비교	38
〈표 III-7〉 영국 Hiscox의 기업휴지보험 약관	43
〈표 III-8〉 프랑스 건전성감독청(ACPR) 기업휴지보험 조사 결과	47
〈표 III-9〉 유럽 국가들의 팬데믹 리스크 보장을 위한 보험 프로그램	56
〈표 IV-1〉 Marsh의 PathogenRX 상품구조	62
〈표 IV-2〉 One80의 Pandemic Protector 상품구조	63
〈표 IV-3〉 팬데믹 영업중단보험 제공 방식 비교	68

그림 차례

〈그림 II-1〉 코로나19 이전 대비 소상공인 업종별 매출액 감소율	7
〈그림 III-1〉 EU 공·사협력을 통한 팬데믹 리스크 해결책의 4가지 구성요소	39
〈그림 III-2〉 EU NDBI 리스크 분담 체계	41
〈그림 IV-1〉 국영보험을 통한 영업중단보험 제공방식	58
〈그림 IV-2〉 팬데믹 리스크 재보험 프로그램(PRRP) 구조	60
〈그림 IV-3〉 팬데믹 채권 기본 구조	66

국내에서 2020년 2월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의 확산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였고, 이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기업휴지보험은 기업이 사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사업을 중단하게 되어 수익이 감소한 경우 휴업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은 사고 발생의 예측 불가능성과 사고의 낮은 빈도 및 높은 심도로 인해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중단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해외 주요 국가들은 팬데믹으로 발생한 영업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정부와 민영 보험회사 간의 협력을 통해 보험회사들이 팬데믹 영업중단보험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보험금 지급능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중단 리스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보험시장 및 자본시장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해외 주요국의 사례와 현재 국내의 재난보험 운영상황을 감안할 때 민영 보험회사들이 일정 한도로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중단 손실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고 초과분에 대해서 정부가 재보험을 지원하는 형태의 리스크 분담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팬데믹 영업중단보험의 도입을 위한 공·사협력체제의 구축을 위해서 보상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팬데믹 리스크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법률 제정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회사들은 팬데믹 영업중단보험 상품의 판매, 손해사정, 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에 있어 보험회사의 인력과 판매채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사업자들이 사업연속성 계획이나 팬데믹 리스크 경감을 위한 사전 조치들을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팬데믹 영업중단 리스크의 보장을 위한 공·사협력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논의해야 할 다양한 이슈가 존재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중단 리스크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와 보험회사는 충분한 대화와 토의를 통해 상호적인 원칙과 한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협력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I

연구 배경

-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정부의 영업정지 및 단축 명령으로 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사업중단으로 인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업휴지보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국내 기업휴지보험은 재산종합보험에서 재물손해와 배상책임 담보와 함께 패키지 형태로 제공되며 기업이 사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게 되어 수익이 감소한 경우 이를 보상하는 상품임
 - 그러나 팬데믹과 같이 드물게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한 보험수요가 낮고 팬데믹 리스크의 넓은 피해범위와 동시다발성, 높은 손해심도, 사고의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해 보험회사들이 이에 대한 리스크를 인수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현재 국내 보험회사들은 생명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감염병에 걸린 개인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장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장 폐쇄나 중단으로 발생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고 있음
 - 국내에서 물적 손해로 인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기업휴지보험이 판매되고 있으나 이마저도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이며, 감염병으로 인한 조업중단과 같은 비물적 영업중단 손실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 존재하지 않음
-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 주요국들은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한 영업손실을 기업휴지보험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험회사와 계약자 간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
 - 해외 국가들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계약에서 담보사고로 인해 영업을 중단된 경우의 손실을 기업휴지보험을 통해 보상하지만 감염병과 같이 건물 및 시설에 물리적 손상이 생기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담보의 범위에서 제외해 왔음
 - 세계 각국의 정부가 코로나19의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해 소규모 점포의 영업정지 및 영업시간 축소 등의 행정규제를 강화하여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매출이 감소하고 기업휴지보험 보험금 청구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음

- 하지만 보험회사들이 감염병으로 인해 발생한 재물손해를 동반하지 않는 영업중단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보험계약자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 등 보험금 지급 압력이 커지고 있음
- 팬데믹 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감염병으로 인한 영업 수익의 감소를 보상하는 보험의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지불 능력 관점에서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영업중단 리스크를 충분히 보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함
 -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중단 리스크는 광범위한 피해가 장기간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매우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이에 대한 리스크를 인수하기가 어려움¹⁾
 - 이로 인해 최근 해외 주요국을 중심으로 보험회사와 정부 간의 상호협력을 통해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중단 리스크를 보장하는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음
-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은 주로 화재·침수 등 직접적인 물적 손해를 보장하는 기업휴지보험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²⁾하고 있으나, 팬데믹과 같은 감염병에 의한 영업손실의 보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음
 - 따라서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한 기업의 영업중단 손실의 보상 방안의 마련을 위해 현재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논의들이 국내 보험회사와 정책당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조사 및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본 연구는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팬데믹 리스크의 보장을 위해 민영 보험회사들과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논의의 배경, 전개 및 발전과정 등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에서 팬데믹으로 발생하는 영업중단 리스크의 보장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본 연구는 팬데믹으로 발생한 기업의 영업중단 손실보장에 대한 해외 국가들의 논의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국내 보험회사와 정부에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중단 리스크의 관리에 대한 전략적·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1) 이에 비해 지진, 허리케인, 산불 등의 대재해 리스크(Catastrophe Risk)는 피해 규모가 크지만 발생지역이 특정 지역에 한정되고 단기간에 걸쳐 발생되는 이유로 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들이 리스크를 인수하고 있음

2) 이기형·한상용(2009); 이기형(2011); 송윤아(2020)

Ⅱ

국내 현황

1.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 2020년 2월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과거의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경제활동 위축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가중되었음
 - 코로나19는 사업의 중단 및 제한, 공급망의 붕괴, 수요 부진, 근로자의 소득 감소와 일자리 상실을 초래하여 국가 경제에 광범위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음
 - 2020년 10월 중소벤처기업부의 통계³⁾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수는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중소기업이 창출하는 고용과 매출액은 각각 83.1%와 48.5%로 나타남
 - 이와 같이 국가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내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중단과 단축으로 인해 매출 감소와 함께 종업원 급여, 유지비, 관리비 등 고정비용 증가와 같은 영업중단 리스크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 최근 코로나19가 종업원 수 300인 미만인 1,000개 중소기업의 영업에 미친 영향을 설문조사한 결과⁴⁾에 따르면, 모든 업종에 걸쳐 약 82%의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함
 - 교육 및 개인 서비스업은 응답 대상의 100%, 숙박 및 음식업의 98.5%, 제조업의 경우 74.3%가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함
 - 피해유형은 매출 감소(87.4%), 방역소독 비용 증가(21.5%), 영업중단과 휴무로 인한 생산차질(14.6%) 순으로 나타남
 - 코로나19의 피해복구를 위한 정부의 긴급 경영안정자금 수혜의 비중은 조사 대상

3) 중소벤처기업부(2020), 「중소기업 기본통계」

4) IBK경제연구소(2020. 6. 28), 코로나19가 중소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

의 9.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들은 해당자금을 인건비 지출(82.3%), 임대료 납부(25.0%), 원자재 구매(16.7%)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응답함

○ 위와 같은 국내의 상황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중단 리스크의 관리가 현 시점에서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와 보험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 정부는 지금까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출 확대, 지급보증 등의 지원을 해왔지만 정부의 직접 원조는 코로나19에 대한 일시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음
- 따라서 정부와 보험회사들은 코로나19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향후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할 영업중단 손실을 보상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가. 코로나19에 따른 관련 업종의 매출 감소 현황

1) 서비스업 매출 감소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내의 서비스 산업은 전체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으며, 그 중에서도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생산지수가 2020년 2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40.3% 감소하여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업종을 세분화하여 서비스업 생산지수를 살펴보면 경기장 운영업(△100.0%)이 2020년 2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함
- 다음으로 여행사업(△90.4%),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88.6%), 항공 여객 운송업(△88.4%),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77.1%)의 순으로 전년 동기 대비 크게 하락하였음

〈표 II-1〉 2020년 분기별 서비스업 생산지수 및 증감률

(단위: 2015=100, %)

업종별	2020년 1분기	2020년 2분기	2020년 3분기
전체 서비스업 생산지수	105.9 (△1.1)	104.8 (△3.4)	103.5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69.3 (△22.4)	65.8 (△40.3)	71.2 (△33.8)
운수 및 창고업	89.9 (△9.2)	86.8 (△18.5)	93.3 (△16.1)
숙박 및 음식점업	82.4 (△16.5)	81.2 (△16.9)	77.6 (△15.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97.2 (△5.0)	95.4 (△12.6)	99.3 (△9.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0.4 (△9.9)	93.2 (△7.5)	85.6 (△5.2)
교육 서비스업	95.9 (△4.9)	93.6 (△5.50)	97.6 (△4.2)
도매 및 소매업	101.1 (△3.1)	101.5 (△4.1)	98.7 (△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3.5 (2.2)	102.6 (△1.4)	92.2 (△0.7)
정보통신업	107.6 (4.6)	109.1 (1.9)	106.8 (△0.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34.9 (4.1)	131.3 (2.0)	132.2 (0.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10.9 (6.7)	110.3 (2.9)	101.3 (1.4)
부동산업	109.0 (10.5)	104.0 (5.8)	109.3 (6.0)
금융 및 보험업	137.9 (9.2)	132.3 (11.5)	127.3 (16.5)

주: 1) 2015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서비스업 생산지수(불변지수)이며 괄호는 전년도 동 분기 대비 증감률임

2) 음영으로 표시한 업종은 소·중·대기업 대비 소상공인의 매출액 비중이 높은 업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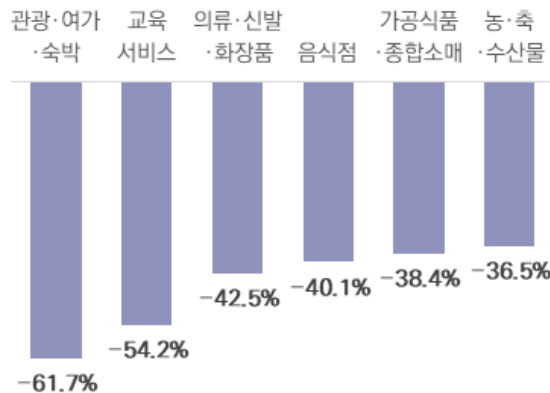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2) 소상공인 영향

○ 매출액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⁵⁾, 코로나19에 영향을 많이 받는 주요 6개 업종의 소상공인 매출액은 코로나19 이전 매출액 대비 5개월(2020년 2~6월) 평균 48.5% 감소함⁶⁾

- 관광·여가·숙박 업종의 매출액 감소율이 12주(2020. 4. 20~2020. 6. 22) 평균 -61.7%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교육 서비스(△54.2%), 의류·신발·화장품(△42.5%), 음식점·종합소매(△38.4%), 농·축·수산물(36.5%) 순으로 나타남

〈그림 II-1〉 코로나19 이전 대비 소상공인 업종별 매출액 감소율



주: 6개 업종의 12주(4월 20일~6월 22일) 평균 매출액 감소율임

자료: 중소기업벤처부 보도자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매출액 조사 결과”, 각 주차별

5)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서울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전년 동기 대비 2020년 상반기 매출이 증가 혹은 동일수준이라는 응답은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많아지는 경향을 보임. 반면 매출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매출액 규모가 작을수록 더 많아짐(중소기업중앙회(2020. 9), p.4 참조바람)

6) 중소기업벤처부 보도자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매출액 조사 결과”, 각 주차별

2. 정부 소상공인 지원사업

○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원하였으며, 그 외에도 저금리 대출 등 금융지원사업과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을 실시함

- 2020년 9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지원 대상 소상공인⁷⁾에게 1~2백만 원의 현금을 지원하였고, 2021년 1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지원 대상 소상공인에게 1~3백만 원을 지원함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20년 7월 말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 청구를 받고 있음
 - 대상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를 실시한 의료기관과 약국, 일반 영업장 등임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상 청구서와 함께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해당 지자체에 제출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생존자금, 경영개선자금 등의 지원정책을 추진해 왔음

- 서울시는 2020년 6월부터 연매출액 2억 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자영업자 생존자금으로 총 140만 원(70만 원씩 2개월)을 지원함
- 인천·대전·충북 등에서도 경영안정자금, 희망드림자금, 공공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7) 특별피해업종(영업제한·집합금지)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1.5~2백만 원을 지원하였고, 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게는 2019년 연매출이 4억 원 이하이고, 2020년에 매출이 감소한 경우 1백만 원을 지원함

〈표 II-2〉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지원종류	발표일	지원사업	구분	지원금액	지원규모
현금 지원	2021. 1. 1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차 재난지원금)	집합금지	3백만 원	4조 1천억 원
			영업제한	2백만 원	
			일반업종*	1백만 원	
	2020. 9. 24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재난지원금)	집합금지	2백만 원	3.3조 원
			영업제한	1.5백만 원	
			일반업종*	1백만 원	
금융 지원	2021. 1. 25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대출	집합금지	최대 1천만 원 임차료 지원 (1.9% 고정금리)	1조 원
	2021. 1. 18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집합제한	최대 1천만 원 (5년간 2~4%대) * 첫 해 보증료 면제 * 2년차 이후 보증료: 0.6%	3조 원
	2020. 12. 9	소상공인 긴급융자지원	긴급대출	2천만 원 * 특별파해업종 1천만 원 추가 지원	3천억 원
	2020. 4. 1	소상공인 긴급유동성 공급	1차	최대 3천만 원 (1~5년간 1.5%)	16조 4천억 원
	2020. 5. 18		2차	최대 2천만 원 (5년간 2~4%) * 2020. 9 한도 확대 * 2021. 1 금리 인하	10조 원
기타 지원	2020. 9. 24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	전직장려수당	50만 원	1천억 원
			점포철거지원	평당 8만 원 (최대 200만 원)	
	2020. 4. 9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최대 3백만 원	지자체 예산 내

주: 1) 별표(*) 표시는 조건부 지원을 뜻함

2) 2021년 1월 25일 기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함

자료: 각 지원사업에 대한 정부기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함

- 위와 같은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어 영업중단 손실에 대한 정부의 일시적 지원이 아닌 지속가능한 보상정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정부는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소상공인의 영업손실보상에 대해서는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최근 국회에서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624호)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의 확대를 통해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을 추가하였음
 - 그러나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영업중단이나 축소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동 법안에 포함되지 않음

○ 현재 국회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명령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발의 및 심의하고 있음

- 2021년 3월 8일을 기준으로 17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각 법안의 세부 내용은 상이하지만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공통된 목적임
-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졌으나, 세부 내용과 소급적용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견이 존재함

〈표 II-3〉 감염병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제도에 대한 논의

의안명	건수	제안 내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건 외	-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신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상공인 및 이외의 자에게 손실보상, 방역조치 위반 시 보상금 감액, 지급 취소,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등(의안번호 2108428) - 상시근로자의 4대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금 감면(의안번호 2107652) - 생계비, 임대료, 조세 등 비용 지원(의안번호 2107403, 2107807) - 임대료 지원(의안번호 2106853, 2106845) - 배달료, 포장용기 등 비용 지원(의안번호 2106802)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구제를 위한 대출 및 이차지원 등 금융지원사업에 사용(의안번호 2107738) - 대출 정책자금 상환 기한 연기 및 이자 감면 등 지원(의안번호 2107845) - 소상공인 영업손실에 대한 재정지원(의안번호 2107915) - 집합금지(매출손실액의 50% 이상), 집합제한(매출손실액의 30% 이상) 업종 손실보상(의안번호 2108036) -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 등 기초 공공요금 감면(의안번호 2108463)

〈표 II-3〉 계속

의안명	건수	제안 내용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 영업손실 보상, 정책자금 대출이자·사회보험료·세제·공과금 감면 등 소상공인 지원(의안번호 2107918, 2107383) - 조세, 각종 대출·융자·이자의 납부 및 상환기간 유예, 무이자 추가 대출 허가 등(의안번호 2108027)
코로나19 등 감염병 재난에 따른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2건	- 감염병 손실보상·피해지원위원회 설치,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고정비용 전부 혹은 일부 보상, 집합금지 대상 소상공인 구직급여 하한액 범위 내 보상, 재난지원금 지급, 특별재난국채 발행 등(의안번호 2107819) - 집합금지(매출손실액 70% 범위 내), 그 외 업종(매출손실액 50~60% 범위 내) 손실보상, 전 국민 대상 50만 원 범위 내 위로금 지급,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공과금 인하·감면, 소급적용 등(의안번호 2107601)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3. 소상공인 대상 영업중단 리스크 보장가능성 검토

가. 필요성

○ 코로나19 장기화로 전 세계적으로 영업중단 손실에 대한 보험금 청구 및 관련 소송이 급증하고 있으며,⁸⁾ 최근 국내에서도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의 조치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의 보상 요구가 커지고 있음

- 따라서 감염병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영업손실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현재 국내 보험회사들이 제공하는 기업휴지보험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절에서는 소상공인 중에서도 코로나19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5개 업종⁹⁾을 대상으로 팬데믹 영업중단보험의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함

8) 손민숙(2020. 7. 6)

9) ①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② 숙박 및 음식점업, ③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④ 교육 서비스업, ⑤ 도매 및 소매업을 말함

나. 매출액과 휴업손실 리스크 규모

1) 매출액 규모

- 2019년 기준 주요 5개 서비스 업종의 기업별 4년간 연평균 매출액의 48.5% 감소를 가정¹⁰⁾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주요 업종의 기업별로 추정된 연간 매출액 손실은 도매 및 소매업이 1억 1천만 원으로 가장 높고, 기타 4개 업종은 2~5천만 원 수준으로 나타남

〈표 II-4〉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주요 업종의 소상공인 연평균 매출액 현황

(단위: 억 원, 개, %)

구분		업종 구분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매출액	2015	68,999	630,641	142,476	92,713	3,307,587
	2016	75,147	665,875	147,044	93,960	3,328,561
	2017	81,956	715,234	135,436	98,896	3,492,538
	2018	88,374	757,615	143,723	104,461	3,541,205
기업 수	2015	115,372	714,330	321,356	169,053	1,448,951
	2016	128,664	719,767	333,682	177,393	1,476,812
	2017	136,491	727,721	321,497	184,489	1,506,535
	2018	139,109	734,324	334,385	195,503	1,544,986
기업별 평균 매출액	2015	0.60	0.88	0.44	0.55	2.28
	2016	0.58	0.93	0.44	0.53	2.25
	2017	0.60	0.98	0.42	0.54	2.32
	2018	0.64	1.03	0.43	0.53	2.29
기업별 연평균 매출액		0.60	0.96	0.43	0.54	2.29
CAGR		2.0	5.3	-1.0	-0.9	0.1
기업별 추정 매출액 손실		0.3	0.5	0.2	0.3	1.1

주: 1)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의 대분류 구분이며, 코로나19 주요 영향 업종 상위 5개를 대상으로 함

2) 기업별 추정 매출액 손실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매출액 48.5% 손실을 가정함

자료: 중소기업벤처부, 「중소기업기본통계」

10) 이는 2020년 중소기업벤처부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매출액 조사에서 주요 6개 업종의 소상공인 매출액이 코로나19 이전 매출액 대비 5개월(2020년 2~6월) 평균 48.5% 감소에서 근거함

2) 영업중단 손실액 추정

○ 소상공인들의 영업중단 손실에 대한 추정을 위해 이기형·한상용(2009)에서 사용한 방식¹¹⁾ 중 가산방식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주요 서비스 업종의 영업중단 손실 규모를 대략적으로 계산하였음

$$\begin{aligned} \text{영업중단 손실액} &= \text{총이익} = \text{영업손익} + \text{고정비}^{12)} && (\text{가산방식}) \\ &= \text{순매출액}^{13)} - \text{변동비} && (\text{차액방식}) \end{aligned}$$

○ 영업중단 손실에 대한 추정 결과, 2019년 기준 주요 5개 서비스 업종 중 중소기업의 1년간 영업중단 손실은 약 382.5조 원 정도로 추정됨

• 도매 및 소매업종의 영업중단 손실액이 354.9조 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숙박 및 음식점업(9.6조 원), 교육 서비스업(4.7조 원),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6.3조 원),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¹⁴⁾(7.0조 원) 등으로 나타남

〈표 II-5〉 주요 서비스 업종의 영업중단 손실액 규모 추정(1년 휴업 가정)

(단위: 조 원)

업종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서비스업		881.8	909.8	950.8	1,016.0	1,075.2	1,121.5
도매 및 소매업	전체	491.3	487.9	504.1	537.5	580.0	597.1
	중소기업	293.7	284.1	296.6	313.1	335.8	354.9
숙박 및 음식점업	전체	16.8	18.0	19.5	19.6	21.2	23.6
	중소기업	6.1	7.0	7.5	7.4	8.2	9.6
교육 서비스업	전체	3.8	5.0	5.5	5.7	6.0	7.0
	중소기업	2.7	3.3	3.6	3.6	3.9	4.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체	16.0	16.5	17.6	17.0	17.9	19.6
	중소기업	3.8	3.9	4.3	4.4	4.9	6.3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2	5.0	5.4	5.9	6.2	7.0

주: 1) 영업중단 손실액 = 영업손익 + 고정비

2)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중소기업 데이터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종합 데이터로 대체함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 연도

11) 이기형·한상용(2009. 3), p. 48을 참조바람

12) 고정비는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 연도의 서비스업 고정비 대 매출액(Fixed costs to sales) 비율 자료를 사용하여 계산하였고, 고정비에 포함되어 있는 영업외비용은 차감함

13) 순매출액 = 총매출액 - (매출환입액 + 에누리액 + 매출할인)

14)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할 수 없는 관계로 전체 통계를 사용함

○ 영업중단 기간을 1년보다 작은 기간으로 다양하게 구분하여 영업중단 손실액을 추정한 결과, 2019년 기준 주요 5개 서비스 업종 중 중소기업의 1개월 영업중단 손실은 약 31.9조 원으로 추정되고, 월 평균 매출액 48.5% 감소를 가정할 경우 약 15.5조 원으로 추정됨

- 구체적으로, 도매 및 소매업(14.3조 원), 숙박 및 음식점업(4천억 원), 교육 및 서비스업(2천억 원),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3천억 원),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3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표 II-6〉 주요 서비스 업종의 영업중단 손실액 규모 추정(휴업기간별)

(단위: 조 원)

업종		1년	9개월	6개월	3개월	2개월	1개월
전체 서비스업		1,121.5	841.1	560.8	280.4	186.9	93.5
도매 및 소매업	전체	597.1	447.8	298.6	149.3	99.5	49.8
	중소기업	354.9	266.2	177.5	88.7	59.2	29.6
숙박 및 음식점업	전체	23.6	17.7	11.8	5.9	3.9	2.0
	중소기업	9.6	7.2	4.8	2.4	1.6	0.8
교육 서비스업	전체	7.0	5.3	3.5	1.8	1.2	0.6
	중소기업	4.7	3.5	2.4	1.2	0.8	0.4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체	19.6	14.7	9.8	4.9	3.3	1.6
	중소기업	6.3	4.7	3.2	1.6	1.1	0.5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전체	7.0	5.3	3.5	1.8	1.2	0.6

주: 1) 2019년 기준 영업중단 손실액 규모임

2) 영업중단 손실액 = 영업손익 + 고정비

3)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통계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구분되지 않음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의 손익계산서 및 제조회가명세서

〈표 II-7〉 주요 서비스 업종의 영업중단 손실액 규모 추정(매출액 48.5% 감소 가정)

(단위: 조 원)

업종		1년	9개월	6개월	3개월	2개월	1개월
전체 서비스업		543.9	407.9	272.0	136.0	90.7	45.3
도매 및 소매업	전체	289.6	217.2	144.8	72.4	48.3	24.1
	중소기업	172.1	129.1	86.1	43.0	28.7	14.3
숙박 및 음식점업	전체	11.4	8.6	5.7	2.9	1.9	1.0
	중소기업	4.7	3.5	2.3	1.2	0.8	0.4
교육 서비스업	전체	3.4	2.5	1.7	0.8	0.6	0.3
	중소기업	2.3	1.7	1.1	0.6	0.4	0.2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체	9.5	7.1	4.8	2.4	1.6	0.8
	중소기업	3.1	2.3	1.5	0.8	0.5	0.3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4	2.5	1.7	0.8	0.6	0.3

주: 1) 2019년 기준 영업중단 손실액 규모임

2) 영업중단 손실액 = 영업손익 + 고정비

3)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통계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구분되지 않음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의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

다.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중단 리스크의 기업휴지보험을 통한 보상가능성

○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중단 손실을 보장하기 위한 재무적인 수단으로 기업휴지보험의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기업휴지보험은 화재 등에 따른 물적 손해를 직접적으로 보장하는 재물보험과 달리 화재나 폭발 등 담보 리스크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기업의 영업이익과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경상비와 같은 휴업 손실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임
- 현재 국내의 기업휴지보험은 화재보험의 보통약관에 기업휴지 손해담보 특약을 첨부하는 방식이나 재산종합보험에서 재물손해, 배상책임 등과 함께 담보되고 있음
 - 국내 기업휴지보험의 담보리스크를 살펴보면, 화재보험의 기업휴지보험 특약에서는 화재나 폭발 등의 리스크를 기본으로 하고 다른 형태의 리스크의 경우 특약을 첨부한 경우에 담보가 가능함
 - 재산종합보험에서는 화재, 낙뢰, 폭발, 풍수재, 지진, 도난, 파손 등으로 인한 영

업중단 손실을 보장범위로 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기업들의 기업휴지보험 가입률은 매우 낮은 상태며 물적 손실을 동반하지 않은 감염병이나 전염성 질병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영업이 중단되고 단축된 경우 발생한 손해는 기업휴지보험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물적 사고로 인한 영업중단 손실을 보상하는 기업휴지보험의 가입은 국내에서 주로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가입실적은 미미한 상태임
 - 2019년 국내에서 기업휴지보험의 계약 건수는 8,613건으로 전체 활동기업 수 653만 개와 대비하여 가입률이 약 1.32%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현재 국내의 기업들은 감염병과 같은 비물적 사고로 인해 발생한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기업휴지보험에 가입을 하더라도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어 팬데믹 리스크로 인한 영업중단 리스크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 2019년 기준 국내 기업휴지보험 원수보험료는 약 1,338억 원으로 이를 모두 사용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을 보상한다 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중단에 따른 수익상실 및 고정비용 지출을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2019년을 기준으로 상기 5개 서비스 업종(중소기업)의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이익의 48.5% 손실을 가정하면 1개월 손해액은 약 15.5조 원으로, 이는 기업휴지보험 원수보험료 1,338억 원의 약 116배이며, 2019년 국내 모든 손해보험회사의 기업성 보험의 원수보험료인 3조 7천억 원과 비교해도 4배가 넘는 모습을 보임
 - 이와 같은 수치는 민영 보험회사들이 단독으로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중단 손실을 보상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줌

〈표 II-8〉 재산종합보험 연도별·담보별 계약 현황

(단위: 천 건, 억 원, %)

구분	계약 건수			원수보험료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재물손해	130.8	155.7	166.7	7,743	7,562	7,508
	(61.1)	(59.6)	(56.8)	(72.0)	(70.1)	(70.3)
기계손해	31.6	32.3	27.4	786	737	701
	(14.8)	(12.4)	(9.3)	(7.3)	(6.8)	(6.6)
기업휴지손해	7.7	8.4	8.6	1,311	1,476	1,338
	(3.6)	(3.2)	(2.9)	(12.2)	(13.7)	(12.5)
배상책임손해	44.1	64.9	90.7	916	1,012	1,127
	(20.6)	(24.8)	(30.9)	(8.5)	(9.4)	(10.6)
합계	214	261	293	10,756	10,787	10,673
	(100)	(100)	(100)	(100)	(100)	(100)

주: 괄호는 구성비임

자료: 보험개발원(2020. 9)

○ 위와 같은 결과는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중단 손실의 보상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인 보험회사와 공공부문인 정부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중단 손실의 보장을 위해 현재 정부 주도로 재난 지원금 등의 지원이 시행되고 있으나 향후 무한정의 자원을 투입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함
- 정부가 팬데믹이 발생할 때마다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에게 지원을 제공한다면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자금은 세금을 통해 조달되며, 이는 국가 채무의 증가를 가져와 현재와 미래의 납세자들에게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문제가 있음
- 민영 보험회사들은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중단 리스크를 단독으로는 부보할 수 없는 실정에 있으므로 팬데믹 영업중단보험의 공급을 위해서는 보험회사와 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
- 정부의 재정지원은 불확실한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해야 하고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지만 정부와 보험회사 간의 협력을 통해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중단 손실을 보상할 경우, 사업자들이 신속하고 확실하게 보험을 통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2021년 2월 손해보험협회는 정부와 협력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손실을 경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을 도입할 계획을 밝힘¹⁵⁾

- 동 계획은 정부 주도의 보상체계만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보험산업 차원에서의 지원을 통해 정부의 부담 완화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함
- 손해보험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중단이나 단축 조치로 피해를 본 사업자들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위해 보험회사와 정부 및 지자체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형태로 정책성 보험의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 그러나 보험회사와 정부 간의 협력에 대한 방안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 향후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업중단 리스크를 보장하기 위한 공·사협력 방안의 구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15) 한국일보(2021. 2. 8), “재난지원금 부족, 보험으로 해결? 손보협회 “팬데믹 보험 검토””

Ⅲ

주요국의 영업중단 리스크 관리 현황

1. 미국

가. 현황

- 미국 의회는 2020년 3월 코로나19가 초래한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근로자, 가정 및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구제와 경기부양을 위한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 구제 및 경제안전법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CARES Act)을 제정하였음
 - 동 법률은 2조 2천억 달러 규모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지원, 실업수당의 지급대상 및 기간의 확대, 가계에 재난지원금 지급, 기업 및 지방정부를 위한 대출 제공, 항공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그러나 동 법률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영업중단 및 축소 조치로 발생한 피해나 공급망의 중단 및 구매 감소가 발생한 경우의 손실에 대한 보상 방안은 포함하지 않음
- 보험회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청구된 영업중단 손실에 대한 막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보다는 정부가 팬데믹에 의해 영업손실을 경험한 사업주와 종업원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코로나19 기업 연속성 및 재해복구 자금(Business and Employee Continuity and Recovery Fund)을 지원해 왔음
 - 동 기금은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종업원들을 계속적으로 고용하고 복지혜택을 유지하며 임대료와 같은 영업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종업원의 급여, 질병이 있는 종업원에 대한 소득 손실, 영업수익 손실 등을 보상함
 - 동 기금에서 보험회사들은 보험금 신청을 받고 검토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지만 손실보상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지지 않음
 - 이러한 방식은 9/11테러와 구조과정에서 부상이나 희생을 당한 사람들의 보상 관계된 손실들을 보상하기 위해 설치된 9/11 희생자 기금(September 11th Victim Compensation Funds)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을 경험한 중소기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다양한 경제 회생계획을 추진해왔지만 많은 사업자들은 기업휴지보험을 통해 영업손실을 보상받기를 원하고 있음

- 미국의 전체 기업에서 99.9%가 종업원이 500명 이하의 소규모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경제활동의 44%를 차지하는 사실¹⁶⁾을 감안할 때 기업휴지보험을 통한 영업손실 보상은 특별히 중요한 이슈임
- 2017년 Nationwide에 의해 수행된 설문조사¹⁷⁾와 미국 보험감독자협의회(NAIC: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의 보고서¹⁸⁾에 따르면 미국에서 중소기업의 약 30%만이 기업휴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약 800만 개의 상업용 재물보험이 기업휴지손실 보상을 포함하고 있음
 - 이 중 90%는 종업원 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 기업을 위한 것이고, 8%와 2%만이 중간규모 기업과 대기업을 위한 기업휴지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임
- 미국의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팬데믹을 부보가능한 리스크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기업휴지보험에서 감염병 등 바이러스로 인한 영업중단 손실에 대해서는 면책규정을 두고 있음
 - 2020년 10월에 실시된 설문조사¹⁹⁾에 따르면, 미국 중소기업의 3/4은 코로나19로 인해 작년 대비 평균 30%의 손해를 경험했으며, 그 중 약 40%는 기업휴지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약관들은 감염병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영업손실을 면책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 보험감독자협의회(NAIC)의 부속기관인 보험정책 연구센터(CIPR: Center for Insurance Policy and Research)는 위스콘신대학의 보험학과와 공동으로 영업중단 손실의 보상에 대한 50여 명의 보험전문가 의견을 조사함²⁰⁾

- 동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보험전문가들은 보험회사들이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중단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보험업계의 지급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민영

16)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2019)

17)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2017)

18)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2020)

19) WISS & COMPANY(2020)

20) Center for Insurance Policy and Research at NAIC and Department of Risk and Insurance at Wisconsin School of Business(2020)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팬데믹 영업중단보험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응답함

- 50% 이상의 전문가들은 팬데믹 리스크를 보장하는 보험은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만 제공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적절한 보험요율을 설정하여 저렴한 보험료를 제공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응답함
- 또한 많은 응답자들은 정부가 민영 보험회사들과 연계하는 경우에 보험시장을 통해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음

〈표 III-1〉 기업휴지보험을 통한 팬데믹 리스크 관리에 대한 설문조사

설문내용	매우 동의	동의	불확실	반대	매우 반대
기업휴지보험의 소급지급을 의무화한다면 정부의 지원이 없을 경우 기업휴지보험을 제공하는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액이 자본의 총액보다 클 것으로 생각하는가?	40.1%	42.6%	13.5%	0.0%	3.8%
팬데믹 리스크를 보장하는 영업중단보험이 민영 보험회사들을 통해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2.5%	10.4%	10.4%	42.6%	34.1%
정부만이 팬데믹 리스크에 대한 영업중단보험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가?	18.7%	26.4%	16.4%	32.4%	6.0%
만약 정부와 민영 보험회사 간의 효과적인 연계가 이루어진다면 민영 보험회사의 기업휴지보험이 팬데믹 리스크를 보장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는가? (예를 들면, 테러보험에서는 민영 보험회사들이 원수 보험자이고 정부가 재보험을 공급함)	15.6%	52.5%	12.5%	13.6%	5.8%

자료: Center for Insurance Policy and Research at NAIC and Department of Risk and Insurance at Wisconsin School of Business(2020)

○ 미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영업손실에 대해 기업휴지보험의 보상 여부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대두되어 왔음

- 미국 보험회사들²¹⁾과 손해보험협회(APCIA: American Property Casualty Insurance

21) 예를 들면, 미국의 보험회사인 Travelers(2020)는 기업휴지보험은 보험계약자가 직접적 물적 손실이나 재물손해로 인해 발생한 영업의 손실을 경험할 때에만 보상을 지급하며 시장조건, 경제활동 부진이나 전염의 두려움에 대한 영업손실이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줄이기 위한 영업정지나 행사취소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또한 The Hartford 보험회사(2020)는 대부분 재물보험들은 화재, 강풍, 도난 등에 의한 직접적인 물적

Association)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며 기업휴지보험은 직접적인 물적 손해나 재물손상에 의해 발생하지 않은 영업손실을 보상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으며 보험약관은 코로나19에 대한 손실보상을 제외하고 있다고 주장함

- 팬데믹은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전체 보험 풀(Pool)에 대한 손실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보험이 보장하는 리스크와 다른 특성을 가지며, 비용은 너무 크고 광범위하여 보험을 사용해서 리스크를 분산시키기 어려움
- 보험회사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중단 손실을 보상한다면 보험회사에게 막대한 손실 및 비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다른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금 지급능력을 약화시켜 궁극적으로 보험회사의 지급불능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함
- 또한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한 영업중단 손실의 보상을 위한 막대한 청구비용은 보험회사 수익창출에 있어 중요한 투자자금의 규모를 줄일 수 있어 보험회사들은 팬데믹 리스크를 보장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국제보험감독자협회(IAI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²²⁾와 미국 손해보험협회(APCIA)는 최근 미국의 일부 주에서 발의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해 소급하여 보상하도록 하는 법안을 다음과 같은 이유를 근거로 반대하고 있음

- 감염병과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인한 영업중단 리스크가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리스크 분산을 위한 재보험도 구매되지 않았음
- 정부가 보험계약을 소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사적계약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미래의 보험계약의 확실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와 개인과 기업을 포함한 모든 보험계약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기존 기업휴지보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는 감염병 리스크와 관련된 손실을 보험회사들이 소급하여 보상하는 것은 수지상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보험회사의 지불능력에 심각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음
- 최근 거대 자연재해리스크(Catastrophe Risk)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해보험업계의 안정성을 손상시켜 모든 보험계약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미국 손해보험협회(APCIA)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중단 손실액을 추정하고 보험회사들이 중소사업자의 영업중단 손실을 충당한다고 가정한다면 미국 손해보험 업계의 자본금

손실과 재물피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지만 바이러스로 인한 영업손실을 보상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고 주장함

22) IAIS(2020)

(계약자잉여금)은 단기간 내에 소진될 것으로 예측하였음²³⁾

- APCIA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휴지손실은 매달 2,550억~4,310억 달러에 이를 수 있고, 코로나19로 발생한 영업손실을 겪고 있는 기업들로부터 3천만 건에 달하는 잠재적 기업휴지 관련 보험청구가 존재한다고 보고함
- 9/11 테러와 관련된 보험을 통한 보상금은 약 470억 달러였고, 2019년 3분기 전체 미국 손해보험에서 보험회사들의 자본금이 8,120억 달러인 것을 고려할 때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중단 손실은 보험회사들의 자본을 2~4달 내에 완전히 잠식할 수 있는 매우 큰 규모의 손실이라고 할 수 있음

〈표 III-2〉 미국 손해보험협회(APCIA)의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손실 추정

구 분	소규모사업자 (종업원 100명 이하)	소규모사업자 (종업원 500명 이하)
영업중단 손실 (1개월 기준)	2,550억~4,310억 달러	3,930억~6,680억 달러
기업 재산보험료(월 45달러 기준) 전체와 비교	50~100배	85~150배

자료: APCIA(2020)

- 또한 APCIA는 보험 부보가능한 리스크의 6가지 기준에 근거할 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영업중단 손실은 모든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보험회사가 보상할 수 없는 리스크라고 주장함

23) Simpson A. G.(2020)

〈표 III-3〉 보험부보가 가능한 리스크와 전염병으로 인한 영업중단 손실

보험부보 가능한 리스크의 조건	조건충족 여부	전염병으로 인한 영업중단 손실
소수의 사람들의 손실을 전체 계약자에게 분산할 수 있어야 함	X	전염병의 영향이 광범위하고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소수 사람들의 손실을 전체에게 분산할 수 없음
손실은 우연한 사건에 의해 발생해야 함	X	정부가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영업을 정지하거나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우연이 아닌 의도적인 행위임
손실은 명확하고 측정 가능해야 함	X	손실의 크기는 불확실성이 매우 크고 정부의 결정에 의해 달라짐
손실은 전체 보험 풀(Pool)의 붕괴를 가져와서는 안 됨	X	손실은 대부분의 계약자와 보험산업 전반에 걸쳐 발생하므로 보험회사의 지급능력을 위협할 수 있음
손실의 확률은 계산이 가능하여 적절한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어야 함	X	신뢰할 만한 과거와 현재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 적절한 보험료를 산출할 수 없음
보험료는 경제적으로 저렴해야 함	X	전염병의 손실은 거액의 보험금 지급을 초래하기 때문에 보험료도 이에 비례하여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됨

자료: APCIA(2020)

○ 이와는 반대로 미국의 중소 사업자 및 변호사 집단은 정부와 보험회사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중단 손실을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미국 리스크 및 보험 관리협회(RIMS: Risk and Insurance Management Society), 전미소매협회(NRF: National Retail Federation), 전미레스토랑협회(NRA: National Restaurant Association) 등은 의회에 팬데믹으로 발생한 영업손실을 보장할 방안 수립을 요구해 왔음
 - 이에 미국 하원은 2020년 3월 전국 상호보험회사협회(NAMIC: National Association of Mutual Insurance Companies), 미국 독립대리점 및 브로커 협회(IIABA: Independent Insurance Agents & Brokers of America)와 보험회사들에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중단 손실을 기업휴지보험의 보장대상에 포함하도록 요청하였음
- 이와 더불어 미국 의회는 보험회사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중단 손실을 소급하여 보상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였음

- 작년 미국의 9개 주는 기업휴지보험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영업손실을 소급적용하여 보상하는 법안을 발의하였고, 이는 주로 종업원이 100~150명인 소규모 기업을 위해 보상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음
- 동 법안들은 감염병으로 인한 영업중단 손실이 보험계약상의 책임으로 명시되어 있는지에 관계없이 보험회사가 소급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도록 제안하고 있음
- 법안들은 공통적으로 기업휴지보험의 소급적용을 통해 중소기업의 영세 사업자를 구제하고자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지급불능을 이유로 강한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으며 제출된 법안의 대부분은 현재 보류상태에 있음
- 제안된 법안들은 기업휴지보험을 통한 보험금의 소급지급에 대한 문구를 제거하기 위해 철회되었거나 수정되었음²⁴⁾

○ 이외에도 미국의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향후 국가적 긴급상황에서 기업휴지보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여러 법안들이 작년에 미국 의회에서 제안되었음

- 2020년 4월에 공화당 Bryan Fitzpatrick 하원의원에 의해 제안된 중소기업 보호법²⁵⁾으로 불리는 법안은 국가 긴급사태 선언 후에 연방정부나 주정부, 지방정부의 영업폐쇄 명령으로부터 발생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함
- 동 법안은 영업중단 기간이 적어도 30일인 경우에 보상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으며 보상의 조건으로 사업주가 영업중단 기간 동안 종업원을 해고하지 않을 것과 종업원의 건강보험을 유지할 것을 요구함
- 동 법안에서 정부는 보험산업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보험회사가 부담한 비용을 일부 환급해 주도록 규정함
- 비슷한 시기에 민주당 Mike Thompson 하원의원에 의해 제안된 기업휴지보험 보상법²⁶⁾은 보험계약자들이 팬데믹이나 영업폐쇄, 강제퇴거, 공공안전을 위한 비상정전 등의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청구가 기각되지 않을 것을 보장하는 내

24) 예를 들면, 법안이 폐기된 루이지애나주의 경우 보험회사들이 기업보상기금에 기여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게 하여 동 기금에 기여하는 회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보험금 청구로부터 면제될 수 있도록 하는 대체법안(SB 495)이 제안되었음. 동 법안에 따르면 루이지애나에서 영업을 하는 보험회사들은 5,000만 달러나 2020년 3월 11일 또는 주의 비상선언 이후 보유한 모든 기업성보험의 총 보상한도의 80% 중 더 큰 액수를 기부함으로써 기금조성에 참여할 수 있음

25) H.R. 6497, Never Again small Business Protection Act of 2020

26) H.R. 6494, 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 Coverage Act of 2020

용을 담고 있음

- 동 법안에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보상과 관계된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이 허락되며, 사업자인 보험계약자들은 보험금의 수령을 위해 종업원의 고용과 종업원 건강보험의 유지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음
- 또한 공화당 상원의원인 Steve Daines는 코로나19로 인해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 사업자들에게 정부가 과거 6개월 평균 수익과 현재 수익의 차이를 90% 한도로 보상하는 내용의 사업장 회생법(WRA: Workplace Recovery Act)을 제안하였음
- 동 법안은 미래에 발생할 팬데믹으로부터 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민영 보험 회사들이 판매하는 기업성보험에 대해 정부가 기금을 출자하는 부가 기업휴지보험(add on insurance)을 공급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2020년 6월 민주당 Mike Thompson 하원의원은 정부가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중단 손실을 보상한 보험회사에게 환급을 실시하는 연방 프로그램 설치를 위한 기업휴지 구호법안²⁷⁾을 제안하였음
- 동 법안은 감염병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책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기업휴지보험을 판매한 보험회사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영업중단 손해에 대해 보험계약자들을 자발적으로 보상하면 정부가 이에 대해 환급해 주도록 제안함

27) H.R. 7412, Business Interruption Relief Act

〈표 Ⅲ-4〉 미국 각 주에서 제안된 기업휴지보험을 통한 보상에 대한 법안

주	법안명(진행상황)	주요 내용
뉴욕	AB 10226(보류)	- 코로나19로 인한 국가비상사태 선언으로 이루어진 영업중단에 의해 발생한 모든 손실에 대해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 - 국가에서 비상사태 선언이 발표된 3월 7일 시점에서 유효한 기업휴지보험이 법안의 대상이며 보험회사는 보험금의 환급을 주 정부에 요청할 수 있음
뉴저지	AB 3844(보류)	주의 비상사태 선언의 기간 동안 중소기업 사업자의 영업중단 손실을 보험회사가 의무적으로 보상해야 함
루이지애나	HB 858(폐기)	-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중단 손실을 약관의 내용과 관계없이 기업휴지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회사에 요구할 수 있음 - 동 법안은 2020년 5월 폐기되었고, 기업보상기금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대체법안이 제출됨(SB 495)
매사추세츠	SD 2888(보류)	보험계약에서 계약조건이나 면책조항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중단 손실을 보상할 것을 제안함
미시간	HB 5739(보류)	- 기업휴지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보험회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손해를 의무적으로 보상해야 함 - 기업휴지보험은 정부의 비상사태의 선언으로 인해 발생한 영업손실에 대해 보상해야 함
오하이오	HB 589(보류)	팬데믹으로 인해 비상사태가 선언되었을 때 종업원이 100명 이하인 중소기업의 사업자들은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기업휴지보험을 판매한 보험회사에 요구할 수 있음
펜실베이니아	HB 2372(보류)	-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중소기업의 영업중단 손실에 대한 보상을 보험회사에 요구할 수 있음 - 자발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해를 보상한 보험회사에 대해 주정부는 보험금을 환급할 수 있음
로드아일랜드	Covid-19 Pandemic Insurance Recovery Act(보류)	- 기업휴지보험에서 면책되는 경우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보험회사에 요구할 수 있음 - 종업원 수 100명 미만의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보험회사는 보험금의 환급을 주정부에 요청할 수 있음
사우스 캐롤라이나	SB 1888(보류)	- 보험계약에서 면책조항의 존재와 관계없이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중단 손실의 보상을 보험회사에 요구할 수 있음 - 종업원 수 150명 미만의 중소기업자에게 적용되며 주정부는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환급할 수 있음

자료: Powers et al.(2020)

○ 미국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보험계약자들이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등 보험금 지급 압력이 커지고 있음

-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중단 손실에 대해 대부분의 미국 보험회사들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에 대한 많은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며 대부분의 경우 보험회사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져 왔음

- 2020년 10월 말까지 약 1,250개의 기업휴지 관련 소송이 미국에서 제기되었으며 이 중 1/3은 식당과 소규모 술집(Bar)에 의한 소송으로 약 75%의 소송이 약관에 바이러스 면책조항을 가지고 있다는 사유로 기각되었음²⁸⁾

- 그러나 일부 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중단 손실을 기업휴지보험이 보상해야 한다는 보험계약자에게 호의적인 판결을 내렸음²⁹⁾

- 영업중단 손실의 보상은 보험산업에 의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식당과 서비스 사업 중심의 집단인 기업휴지그룹(BIG: Business Interruption Group)은 2020년 5월에 보험을 통한 손실복구 프로그램(BIG Insurance Relief Program)을 제안하였음³⁰⁾

- 동 프로그램은 바이러스를 면책사항으로 포함하지 않고 기업휴지보험을 판매한 보험회사들은 자발적으로 코로나19로부터 초래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대해 연방정부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동 제안은 사업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중단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하고 보험회사들이 미래 법적 절차로부터 생기는 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현재 미국의 보험회사들과 보험단체들은 의회에 제안된 테러리스크 보험과 유사한 형태의 팬데믹 보험제도의 도입에 찬반의 의견을 나타내고 있음

- 미국 손해보험협회(APCIA)와 상호보험회사연합회(NAMIC)는 팬데믹 리스크의 영향

28) National Law Review(2020)

29)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법원은 16개의 식당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상업용 재산보험은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영업폐쇄 명령으로부터 발생한 영업중단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림(North State Deli LLC et al. v. The Cincinnati Insurance Co. et al.; 20-CVS-02569); 플로리다 연방법원은 바이러스 면책조항은 보험계약자들이 기업휴지보험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영업중단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음(Urogynecology Specialist of Florida, LLC v. Sentinel Insurance Company, Ltd); 뉴저지 법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물리적 피해의 존재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중단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데 반드시 요구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음(Optical Services USA/JCI v. Franklin Mutual Insurance Co, No BER-L-3681-20)

30) Insurance Journal(2020a)

이 더 광범위한 지역에 미칠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테러리스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진다고 주장함³¹⁾

- 동 단체들은 팬데믹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할 보험금의 수준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는 정부의 지원에 의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보험회사들은 단지 행정적 지원을 수행하고 정부가 보험금 지급의 최종적 책임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함
- 그러나 미국 보험계리학회(AAA: American Academy of Actuaries)는 팬데믹 리스크는 테러리스크 보험 프로그램이나 국가홍수 프로그램에 의해 보장되는 연방정부가 재보험을 지원하는 대재해 리스크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부에 의한 재보험 프로그램 설치를 지지하였음³²⁾

나. 미국의 기업휴지보험과 보상 조건

○ 미국에서 기업휴지보험은 대부분 상업용 재산보험의 일부 또는 특약의 형태로 판매되고 있으며 보장대상 리스크가 피보험자의 재산에 물리적 손해를 초래하여 영업이 중단된 경우의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음

- 미국의 기업휴지보험 상품은 독립된 기업휴지보험(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 사업자종합보험(Business Ownership's Policy), 상업용 재물보험(Commercial Property Policy)의 세 가지 형태로 제공되고 있음
- 일반적으로 미국의 기업휴지보험은 사업의 중단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분과 동 기간 동안 발생한 고정비용, 사업을 복구하는 데 필요한 추가비용(Extra Expense), 정부의 사업장으로서의 접근금지(civil authority) 등의 손해를 담보함
- 중소기업의 기업휴지보험은 보험서비스국(ISO: Insurance Services Office)이 개발한 사업수입 손실(및 추가비용) 보상 약관(Business Income(and Extra Expense) Coverage Form)과 건물 및 동산담보 약관(Building and Personal Property Coverage Form)의 두 가지 표준약관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 대규모 기업의 경우 보험회사의 개별약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협상에 의해 보험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표준약관에 비해 복잡하고 보상의 범위가 넓은 경향이 있음

31) Insurance Journal(2020b)

32) American Academy of Actuaries(2020)

○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영업중단 손실에 대한 보상 여부는 보험계약의 조건이나 손실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기업휴지보험은 직접적인 물리적 손해의 존재, 보장대상 리스크에 의한 손실의 발생, 피할 수 없는 사업중단에 의한 손실 발생 등을 기본 보장조건으로 두고 있음
- 미국 기업휴지보험 표준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 보장 리스크는 폭발, 낙하물, 화재, 우박, 결빙, 번개, 파괴행위, 폭설, 강풍 등이며, 면책리스크로는 바이러스, 세균, 지진, 홍수, 전쟁, 파편 또는 누수, 핵반응이나 방사선, 정전 등임
 - ISO의 표준 기업휴지보험 약관은 오염물질(Pollutant)³³⁾의 방출이나 누출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는 면책으로 정하고 있으며, 바이러스나 세균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도 면책특약으로 정하고 있음³⁴⁾
- 기업휴지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은 복구기간 동안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사업중단 후 72시간 이내의 손실은 면책이며 그 이후의 손실이 보장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음
- 표준 기업휴지보험 약관은 개인, 단체, 조직, 또는 정부기관의 행위 또는 결정에 의해 생기는 손실 또는 손해는 면책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휴지보험에는 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해 영업을 폐쇄되거나 중단된 경우에 발생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행정당국(Civil authority)조항이 추가 보상조항으로 포함되어 있음
 - 동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의 인접 또는 인근 시설에 물리적 손해가 발생하고, 손실 또는 손해가 보장 대상 리스크에 의해 발생한 것이어야 하며, 행정당국의 영업 폐쇄 명령이 72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해야 하는 등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2020년 2월 미국의 보험요율 산출기관인 Insurance Services Office(ISO)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영업중단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을 상업용 재물보험에 특약으로 첨부할 수 있는 새로운 표준 기업휴지보험 약관을 개발하였음³⁵⁾

33) 오염물질은 연기, 증기, 매연, 산, 알칼리, 화학물질, 폐기물 등을 포함함

34) 동 특약은 2003년에 유행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의 경험을 바탕으로 2006년에 ISO에 의해 특약으로 도입되었음

35) Insurance Services Office(2020)

- 동 특약은 팬데믹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발생한 영업손실 및 추가비용을 보상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음
 - 보험계약자는 기업휴지보험이 적용되는 특정 장소 또는 동일 장소에 소재된 대상물, 보험기간, 연간 총 보상한도액을 계약 체결 시 명확히 정해야함
 - 보상은 행정당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폐쇄나 중단을 시행할 경우 영업중단의 실제 손실 또는 필요한 추가비용을 포함함
 - 보상은 영업정지 시점부터 시작되며 정부의 명령이 유효한 기간까지 적용됨
- 동 특약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발생 횟수에 관계없이 1년의 보험기간 동안에 발생한 모든 보험사고에 대해 총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을 받게 됨
 - 예를 들면, 보험계약자의 총 보상한도가 \$100,000이고 행정당국의 영업폐쇄 명령으로 인해 \$40,000의 영업손실이 먼저 발생하여 보상을 받고 난 후, 다른 행정명령이 발동하여 다시 \$70,000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은 총 한도액에서 이미 받은 보상액을 제외한 \$60,000로 제한됨
- 동 약관은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면책조항으로 두고 있음
 - 개인 또는 집단이 질병, 피해, 불안을 일으킬 의도를 가지고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경우
 - 오염 또는 오염의심물질을 청소나 소독하기 위한 비용
 -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자신의 재산이나 타인의 재산을 대체하거나 처분하기 위한 비용
 - 체액 또는 폐기물을 소독하거나 처분하는 비용
 - 코로나 바이러스의 존재를 테스트하거나 감시하는 비용
 - 질병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서 발생한 영업손실이나 비용
 - 보험약관에 의해 보상되는 영업중단을 제외하고 근로자나 관리자의 감염이나 감염 의심으로 인한 휴업에서 초래된 손실이나 비용
 - 정부당국에 의해 보험계약자에게 부과된 벌금 또는 처벌에 대한 비용

다. 미국에서 제안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중단 손실보상 방안

○ 2020년 5월 민주당 Carolyn Maloney 하원의원은 향후 발생할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중단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팬데믹 리스크 보험 법안(PRIA: Pandemic Risk Insurance Act)을 발의하였음

- 9/11 사태 이후 제정된 연방 테러리스크보험법(TRIA: Terrorism Risk Insurance Act)을 모델로 하여 제안된 PRIA는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발생한 영업중단 손실에 대해 보험회사들은 일정 한도의 초기 손실을 부담하고 재보험 안전장치로서 정부는 초과손실에 대해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 동 법안은 현재 진행되는 코로나19의 해결을 위해 적용되지 않으며 통과될 경우, 2021년 1월 21일 이후 발생하는 팬데믹부터 해당 법안의 적용을 받게 됨
 - 동 법안은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중단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민영 보험회사와 정부 간의 공·사협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발생한 팬데믹에 대한 장기적인 보장체계의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동 법안 아래서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중단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미국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공 보건위기 상황의 승인이 필요하며 미국 재무부는 팬데믹 리스크 재보험 프로그램(PRRP: Pandemic Risk Reinsurance Program)을 운영하며 보험회사의 재보험 역할을 하게 됨
 - 정부는 총 보험산업 손실이 2억 5천만 달러를 초과할 때 보상에 참여하기 시작하고 보험회사의 자기부담금(직전 연도의 경과보험료의 5%)을 초과하는 손해의 95%를 보상하며 연간 7,500억 달러까지의 손실을 한도로 보상함³⁶⁾
 - 보장된 손실에 대해 다른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경우 이중 수령(double-dipping) 방지를 위해 PRRP로부터 받는 보상금의 액수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받은 금액만큼 줄어들게 됨
- 팬데믹 리스크 재보험 프로그램(PRRP)의 설치를 위해서는 향후 민영 보험회사와 정부 간에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중단 리스크의 분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함
 - PRIA의 제안에서는 보험자의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달러 한도가 없으며 보험회

36) 이와 비교하여 2020년의 TRIA하에서 테러손실에 대한 연방정부의 참여는 보험회사 손실이 2억 달러를 초과한 후에 시작되며 1,000억 달러를 한도로 하고 있음

사의 참여가 자율적이며 의무화되어 있지 않음

- 테러리스크보험과는 달리 PRIA에서는 정부가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한 영업손실이 보험회사들에 의해 보상되는 수준까지 정부의 사업자에 대한 폐쇄조치를 늘릴 수 있는 등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함
- 그러나 동 법안은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종업원의 급여는 보장하지 않으며 의무보험이 아닌 이유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들이 보험에 가입한 다른 사업주들로부터 혜택을 받는 무임승차(free rider)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미국 손해보험협회(APCIA), 전국 상호보험회사협회(NAMIC), 미국 독립대리점 및 브로커협회(IIABA)들은 정부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한 후 영업의 중지를 지시한 중소기업 고용주에 대해 신속한 보상을 공급하도록 하는 사업연속성보호 프로그램(BCPP: Business Continuity Protection Program)의 구축을 제안하였음

- 동 프로그램의 목적은 향후 팬데믹으로 인한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언이 이루어질 때 적시에 사업자들이 재정적인 보호와 종업원의 급여에 대한 지원을 받음으로써 국가의 경제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동 프로그램하에서 사업주는 정부가 팬데믹으로 인한 긴급사태 선언 이후 3개월까지의 종업원 급여, 복리후생비, 기타 영업비용의 최대 80%까지 보상(고액연봉자 제외)을 받을 수 있는 수익대체보조(Revenue Replacement Assistance) 상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사업자들은 희망하는 보상수준을 사전에 선택할 수 있음
- 동 프로그램은 국가 홍수보험프로그램(NFIP)과 유사하게 주로 연방 재난 관리청(FEMA)에 의해 운영되고 민영 보험회사들은 보험의 인수, 손해사정과 같은 보험상품의 공급자로서의 역할만 담당하고 정부는 보장범위와 보험료를 결정하며 보장된 손실들에 한하여 보상을 지급할 책임을 가짐
- BCCP는 사업자들이 납부하는 보험료에 의해 운영되며 보험회사들은 화재보험, 재물보험 등을 구매하는 사업자들에게 사업연속성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고 사업자들은 보험상품 구매에 대한 선택권을 가짐
- 사업자들은 과거 연도의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며 정부의 팬데믹 리스크 안전지침을 준수하고 보상금을 종업원 고용유지와 필요한 영업비용을 지불하는 데에만 사용할 것을 서약해야 함

- 동 프로그램하에서 보상은 연방정부가 공중보건 위기(Public Health Emergency)를 선언한 경우 자동으로 지급되며 미리 정해진 보상금액 및 명확한 발동요건(Parametric trigger)을 적용하여 신속한 보장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음
 -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언과 함께 자동으로 구제조치가 발동되고 보상은 서류제출이나 손해조사 없이 신속히 이루어지며 사업자들은 원하는 보상수준 만큼의 수익대체 보조상품을 비상사태 선언의 적어도 90일 전까지는 구입해야 함
 - 보험료는 리스크기반 보험료(risk-based premium)가 아닌 사업자들이 수령하기를 원하는 종업원의 급여와 비용 등의 비율로 계산되며 지역, 산업, 리스크의 정도와 관계없이 사업자의 영업이익의 동일한 비율을 납부하는 형태로 되어 있음
 - 사업자가 보험금을 수령할 자격이 되는지 여부와 금액 등은 북미산업분류 시스템(NAICS: 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코드에 의해 결정됨
 - 예를 들면, 영업폐쇄 명령을 받은 산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업자들은 약관에 정해진 100%의 보상을 받으며, 부분 폐쇄조치를 받은 사업자들은 100% 미만의 보상을 받게 됨
 - 부분 보상 비율은 산업의 종류나 정부명령에 의한 영업 제한의 정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자들은 보상금을 종업원들을 계속 고용하고 필요한 영업비용을 지불하는 데에만 사용해야 하며 긴급선언 기간 동안 건강과 안전에 대한 모든 정부 지침을 준수하는 등 리스크 완화(risk mitigation)조치를 수행해야 함
 - 보험에 가입한 사업자들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나 직업안전 위생관리국(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에 준수사항을 수시로 보고해야 함
 - 정부는 보상금 지불 후에 보상금의 사용이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지급된 보상의 상황이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미국에서 기업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들은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을 위해 사업연속성 연합(BCC: Business Continuity Coalition) 프로그램의 구축을 제안하였음
- 동 제안은 정부가 연방 감염병보험공사(FPIC: Federal Pandemic Insurance Program)를 설치하여 기업비용보험 프로그램(Business Expense Insurance Program)과 행사취소보험 같은 상품에 대한 재보험의 공급을 제안함

- 연방 농작물보험(Federal Crop Insurance)³⁷⁾과 유사하게 보험회사들은 보험계약의 5%를 보유하고 나머지 95%를 재보험으로 출재하거나 10%를 보유하고 나머지 90%를 출재하는 두 가지 선택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
- 동 제안에서 발동요건(trigger)이 충족되면 보험계약자들은 직전 연도의 종업원 급여와 고정 영업비용의 3개월 치 비용의 일정 비율에 근거하여 미리 결정된 수준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됨
 - 중소기업 사업자들은 3개월 치 영업비용의 80%, 대기업들은 50%를 최대로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사업자들은 보상금을 종업원의 급여나 영업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사용했다는 증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동 프로그램은 사업자들의 보험료와 연방정부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며 리스크 기반 보험료 부과와 리스크 완화 조항을 포함할지의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

○ 보험회사 Chubb는 정부가 공동방어벽으로 역할을 수행한다면 보험회사들은 팬데믹과 같은 전염병의 보험부보에 나설 수 있다는 의견을 주장하였음

- Chubb는 팬데믹 영업중단 프로그램(Pandemic Business Interruption Program)을 제안하면서 정부가 안전장치(backstop)를 공급한다면, 보험회사들도 팬데믹 리스크를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함
- Chubb의 제안은 소규모 사업자와 중·대규모 사업자에 대한 두 부분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으며 민영 보험회사들이 소규모 회사들에 팬데믹 보장을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제안함
- 종업원 수가 500명 이하의 소규모 기업들의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팬데믹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상기의 BCC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종업원 급여와 기타 영업비용에 대해 지수형 보상방식(Parametric formula)을 사용하여 신속한 보상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음
 - 2,500억 달러까지의 손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험회사의 보상비율이 커지는

37) 연방 농작물보험 프로그램(FCIP: Federal Crop Insurance Program)은 연방 농작물보험공사(FCIC: Federal Crop Insurance Corporation)와 보험회사가 체결한 재보험계약(SRA: Standard Reinsurance Agreement)에 의해 3단계 재보험 구조로 운영됨. 구체적으로 동 프로그램은 1단계에서 보험회사들은 체결한 보험계약을 고 리스크 기금과 저리스크 기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2단계에서는 리스크 집단별로 기금 손해를 구간에 따라 정부와 보험회사가 손실을 공동 부담하며, 3단계에서는 2단계 손익 분담 후 전체 재보험 가입 품목에 대한 손익을 산출하여 손실 또는 이익 합계액의 6.5%를 FCIC에 전가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

구조로 보험회사들과 정부의 공동인수에 의해 보상되고, 5,000억 달러를 초과하는 손실은 정부에 의해 보상이 이루어지며 최대 보상한도액은 7,500억 달러임

- 종업원 수가 500명 이상인 중·대규모 사업자에 대한 영업중단 리스크 보장의 경우 민영 보험회사들은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국영 재보험회사인 팬데믹 재보험(Pandemic Re)에 출재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리스크를 기반으로 하여 산정됨
 - 보험회사들은 일정 프로그램 시작 후 첫 5년 동안은 보험계약의 95%를 출재할 수 있으며 보험업계가 최대 보유할 수 있는 한도액은 150억 달러이나 이후 10년째에는 90%까지 출재금액이 감소하고 보험업계의 최대 보상한도는 300억 달러로 증가하는 구조이며 최대 보상한도액은 4,000억 달러임
 - 보험계약자들은 1~3달까지의 보상기간을 선택할 수 있고 보험증권당 최대 5,000만 달러의 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의 지급은 실손보상 방식(Indemnity basis)으로 이루어짐
- Chubb가 제안한 프로그램에서 재원은 사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와 정부의 보조금에 의해 조달되며 보험료는 리스크를 기반으로 하여 결정되나 리스크 완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보험회사 Zurich는 보험회사들이 보유할 리스크의 규모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비례 재보험 형태의 재보험 풀의 설치를 제안하였음

- 구체적으로, 첫 번째 재보험 풀에서는 보험회사들이 리스크를 보유하지 않고 100%의 보험계약을 연방정부에 출재할 수 있으며, 두 번째 풀에서는 5%를 보유하고 95%를 출재하고, 세 번째 풀에서는 10%를 보유하고 90%를 출재하는 구조를 선택할 수 있음
 - 보험회사들은 개별 보험계약에 포함할 리스크 규모를 판단하고 3가지 재보험 풀 중에서 어느 풀에 리스크를 출재할지 결정할 선택권을 가지게 됨
 - 따라서 동 제안은 보험회사들이 팬데믹 리스크에 대한 노출정도나 자사의 역량에 따라 효과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동 프로그램 아래서 500명 이상의 종업원 수를 가진 사업자들은 매월 2,000만 달러 한도로 3개월 동안 종업원 급여를 포함한 영업비용의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은 지수형 보상(Parametric formula) 형태로 되어 있음
- 동 프로그램은 산업의 종류와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변하는 지수를 근거로

하여 산정된 리스크 기반 보험료와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함

- 최대 손실액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ROL: Rate On Line)은 종업원 수가 500명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2%, 500명 이상 사업자는 3%로 정해지며 리스크 완화 조치를 잘 수행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0.5%의 보험료 감면혜택이 주어짐
- 보험회사들은 사업연속성 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이나 회복 계획(resilience planning) 같은 리스크 완화 조치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사업자들에게 제공해야 함

〈표 III-5〉 Zurich 선택형 재보험 구조

구분	정부	보험회사
I	100%	0%
II	95%	5%
III	90%	10%

〈표 III-6〉 미국의 팬데믹 리스크를 보장하는 보험 프로그램 제안 비교

특성	PRIA	BCPP	BCC	Chubb	Zurich
민영 보험회사 리스크 분담 여부	분담	분담하지 않음 (정부가 전적으로 보상)	분담	분담 (소규모회사: 공동보험 및 정부 보조 중·대규모기업: 국가 재보험)	분담
보험회사 참여	자발적	기본보장: 의무 추가보장: 자발적	의무	Part I: 의무 Part II: 자발적	100% 재보험 옵션과 함께 의무
재보험 존재 여부	존재	존재하지 않음	존재	존재	존재
보장내용	표준 기업휴지담보와 동일	종업원 급여와 비용	종업원 급여와 비용	종업원 급여와 비용	종업원 급여와 비용
보험금 지불방식	실손보상 (Indemnity)	지수형(Parametric)	지수형(Parametric)	Part I: 지수형(Parametric) Part II: 실손보상(Indemnity)	지수형(Parametric)
리스크 기반 보험료	존재하지 않음	존재하지 않음	존재하지 않음	존재	존재
리스크 완화 조항	존재하지 않음	존재	존재하지 않음	존재하지 않음	존재

자료: Klein and Weston(2020)

2. 유럽

가.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

-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 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Authority)은 보험을 통해 팬데믹 관련 영업중단 손실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업계와 보험소비자의 대표들과 함께 논의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0년 7월에 팬데믹 리스크 해결을 위한 이슈보고서³⁸⁾를 발간하였음
- 동 보고서에서 제안된 공·사협력을 통한 팬데믹 리스크 해결책은 리스크 측정(Risk assessment), 리스크 예방(Risk prevention), 보험상품 설계(Product design), 리스크 전가(Risk transfer)의 4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III-1〉 EU 공·사협력을 통한 팬데믹 리스크 해결책의 4가지 구성요소



자료: EIOPA(2020)

- 동 보고서는 팬데믹으로 인한 리스크를 민영 보험회사와 공공부문의 협력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4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 민영 보험회사와 정부는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과 책임을 공유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함
 - 팬데믹 리스크의 해결을 위해서는 보상한도와 조건에 대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간의 조정과 협력이 필수적임
 - 공·사협력의 성공 여부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리스크 예방 및 대응체계의 수립과 실행에 달려있음

38) EIOPA(2020)

- 팬데믹 리스크의 해결을 위한 공·사협력은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비용만을 보상하는 장치로서 설계되어야 함

○ 동 보고서는 보험을 통해 팬데믹으로 인한 리스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4가지 구성요소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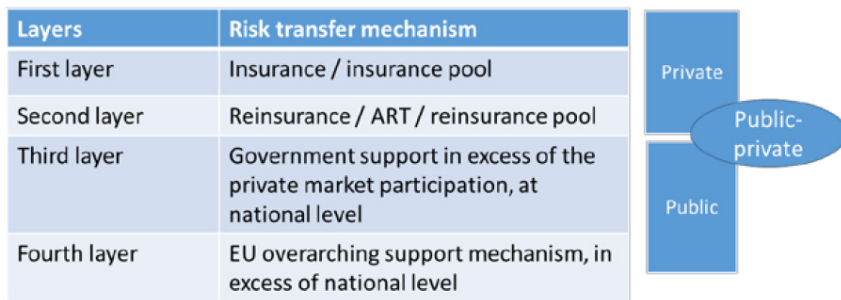
- 리스크의 측정(Risk assessment)
 -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한 물적 손해를 동반하지 않는 사고로 인한 영업중단(NDBI: Non-Damage Business Interruption)³⁹⁾의 리스크를 보다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정부와 민영 보험회사들은 공동으로 데이터를 집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리스크 분석모델을 구축해야 함
- 리스크의 예방(Risk prevention)
 - 유럽 리스크 관리협회, 보험회사, 소비자보호단체 등에 의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팬데믹 리스크에 대한 사전교육은 향후 발생할 팬데믹에 대한 예방 및 대응조치의 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사업연속성 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ning)의 수립 및 이행을 충실히 수행한 사업자들에게 대한 보험료 감면 등을 통해 사업자들이 리스크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상품 설계(Product design)
 - NDBI를 보장할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조건, 보장범위, 면책조항 등을 약관에 투명하고 확실하게 명시하고, 화재나 재산보험과 같은 다른 보험상품들과 함께 결합방식(bundling)으로 판매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함
 - 패러매트릭 보험(Parametric Insurance)은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간에 사전 합의된 지표들(event parameter 또는 index value)에 의해 보상이 결정되는 구조로,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중단 손실의 신속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들은 패러매트릭 보험의 공급을 확대해야 함

39) 일반 기업휴지보험은 감염병을 담보하지 않지만 NDBI는 감염병(Infectious diseases), 접근금지(Denial of access), 방문객 급감으로 인한 매출피해(Loss of attraction)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함. 그러나 대부분의 NDBI의 약관은 전염병의 감염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생기는 것을 요건으로 하며 사업폐쇄로 인한 간접적인 사업 손실은 보상하지 않음

• 리스크 전가(Risk transfer)

- 리스크의 전가는 민영 보험회사, 재보험회사 및 대체 리스크 전가(ART: Alternative Risk Transfer),⁴⁰⁾ 개별 국가, 유럽연합(EU)⁴¹⁾으로 구성된 4계층(4 Layers)시스템을 통해 공동으로 분담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며, 각 계층별로 총 보상한도나 유예 기간 등 리스크 보유 수준에 대한 내용이 명확히 정해져야 함
- 공·사협력에서 리스크 전가의 방식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민영 보험시장에서 리스크의 측정과 재보험자의 인수능력이 증가할수록 개별 정부나 EU 차원의 보상이 줄어드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함

〈그림 III-2〉 EU NDBI 리스크 분담 체계



자료: EIOPA(2020)

- 그러나 동 보고서는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 사이에 보험 보급률, 노동시장과 경제 환경의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통일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고 언급함
- 현재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은 EU 차원의 공동대응을 팬데믹뿐 아니라 기후 변화, 테러, 사이버 리스크와 같은 리스크에 대한 대처를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40) 대체 리스크 전가(ART)는 대재해 채권(Catastrophe Bond)과 같은 보험연계증권(Insurance linked securities)의 사용을 통해 리스크 전가의 한 계층을 담당할 수 있으며, 현재 EU의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책인 차세대 EU 계획안(Next Generation EU)은 금융시장에서 재무적 수단을 통해 추가적인 자금 확보를 추진하고 있음

41) 공·사협력 모델의 마지막 계층에 있는 EU는 회원국가의 기금이나 재보험회사의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받는 대가로 개별 국가 차원에서 누적손실이 일정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한 재보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

나. 영국

- 영국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보조 프로그램과 종업원 급여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해 왔음
 - 2020년 3월 영국 정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종업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해 종업원을 일시 휴직시켰을 경우, 종업원의 급여를 지원하는 일자리보존계획(Job retention scheme)을 실시하였음
 - 동 프로그램은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등의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월 2,500파운드를 최대로 하여 휴직 기간에 급여의 80%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 2021년 9월까지 지급기간이 연장되었음
 - 동년 4월에 시행된 자영업자 소득보조 프로그램(SEISS: Self-Employment Income Support Scheme)은 연간 소득이 5만 파운드 이하인 사업자에게 3개월 동안 7,500파운드 한도로 월평균 영업이익의 80%의 보조금을 제공하였음
 - 동년 7월에 시행된 제2차 SEISS는 사업자들에게 월평균 영업이익의 70%를 6,570파운드 한도로 보조금을 3개월 연장하였으며, 11월에 시행된 3차 프로그램은 보조금의 수령 기간을 2021년 4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하였음
- 2019년 Globaldata에 의한 설문조사는 영국의 중소기업 중 약 17.3%만이 기업휴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중 대부분은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손실을 보상하지 않아 보험계약자들과 보험업계 사이에 이로 인한 법적 분쟁의 소지가 존재한다고 보고함⁴²⁾
 - 영국 보험협회(ABI)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한 영업중단이 발생할 경우 기업휴지보험에 대한 보험금 청구 건수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이로 인한 보험금 규모는 약 9억 파운드(1조 4천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함⁴³⁾
- 영국에서는 코로나19로 발생한 영업손실에 대해 기업휴지보험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금 지급에 대한 집단 소송이 제기되어 왔음
 - 영국의 많은 보험회사들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발생 이후로 보험약관에 보상 대상으로 하는 질병을 명시하고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영업중단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해 왔음

42) GlobalData(2020)

43)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2020)

- 그러나 Hiscox 같은 일부 보험회사들은 신고를 필요로 하는 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영업중단 손실에 대해 최대 10만 파운드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항을 약관에 포함하였음
- 코로나19는 2020년 3월 5일에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신고가 필요한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되었음
- 그러나 Hiscox는 반경 1마일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접근금지 조치가 있거나 특정 사건이 발생하여 영업폐쇄 조치가 있는 경우에만 보험금의 지급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 이로 인해 369개의 기업으로 구성된 Hiscox Action Group은 Hiscox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영국 보험협회(ABI)는 보험금의 지급은 보험회사의 약관에 따라 책임의 유무가 판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표 III-7〉 영국 Hiscox의 기업휴지보험 약관

구분	약관 내용
보장대상	다음의 사유로 인한 피보험자 영업활동의 중단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보험자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 보상을 제공함
공공기관	〈중략〉 11. 보험 기간 동안 공공기관에 의해 부과된 다음의 제한적 조치로 인해 피보험자의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a. 살인이나 자살 b. 감염이나 전염병의 발생(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필요가 있음) c. 보험에 가입된 시설에서 소비된 음식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 d. 배수구 또는 기타 위생 설비의 결함 e. 보험시설에서 해충의 발생

자료: <https://www.hiscox.co.uk/>

- 2020년 6월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은 보험계약자들을 대표하는 형태로 8개의 영국 보험회사⁴⁴⁾를 상대로 기업휴지보험 약관이 일반적으로 포함하는 특정 조항을 코로나19 사태에 적용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음⁴⁵⁾

44) 소송 대상인 8개 회사는 Hiscox, Arch, Argenta, MS Amlin, RSA, QBE, Zurich, Ecclesiastical임

45) 동 소송은 2015년 영국에 도입된 금융시장 테스트 사례계획(Financial Markets Test Case Scheme)에 기반을

- 2021년 1월 영국 대법원은 FCA의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여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영업손실은 일반 보험계약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최종 확정하였음

- 영국 대법원 판결의 주요 쟁점은 대부분의 기업휴지보험 약관에 포함되는 4가지 조항⁴⁶⁾을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한 사항임
- 이로 인해 현재 영국에서 기업휴지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영업중단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음
- 영국에서 현재 37만 명의 보험계약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60개의 보험회사에 의해 판매된 700여 개의 기업휴지보험 약관에 대한 보험금 청구소송이 이번 판결로 인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영국은 보험회사 경영자들이 정부가 보조하는 테러재보험 풀인 Pool Re를 확대하여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손실을 보장하는 Pandemic Re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 2020년 4월 코로나19 상황에서 보험산업의 역할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보험회사 경영자들을 회원으로 하는 운영그룹이 구성되었고, 6월에는 보험브로커, 경영컨설턴트,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괄하는 50여 명의 회원과 6개의 워킹그룹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운영위원회가 조직되었음
- 프로젝트 운영위원회는 현재 테러리스크에 대한 정부지원 재보험 풀인 Pool Re를 기본 모델로 하여 향후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중단 손실을 보상하는 재보험회사인 Pandemic Re의 설립을 계획하고 있음
- Pool Re는 테러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실의 규모와 상관없이 보상을 하는 것이 목적으로 영국의 손해보험회사들과 로이즈가 출자하여 설립한 상호보험회사 형태의 재보험회사임

두고 있는데 이는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분쟁 당사자들 사이에 구체적 분쟁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특정 금융법상의 논쟁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경우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고등법원의 특별재판부에 해당 논쟁을 해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임

- 46) 상기 4가지 조항은 1) 지정 감염을 이유로 피보험자에 대해 발생한 영업방해로 인하여 입은 손실의 보상(Disease Clauses), 2) 지정 감염의 발생으로 인해 정부가 피보험자를 사업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 발생한 영업방해로 인해 피보험자가 입은 손실의 보상(Prevention of Access Clauses), 3) 위의 두 가지 조항을 혼합한 형태의 리스크에 대한 손실보상(Hybrid Clauses), 4) 영업중단으로 인해 입은 손실의 산정 시 피보험자의 이전 사업 실적과 비교(Trends Clauses)임

- Pool Re는 손해액이 사고당 1억 파운드, 연간 손해 보유액 2억 파운드까지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보험회사들이 시장점유율에 따라 보유한다액 내에서 보상하며, 그 이상의 손해는 Pool Re가 기금을 통해 보상하고 기금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영국 정부가 보상하도록 하는 3계층 구조로 되어 있음
- Pool Re는 회원사로부터 받은 자금을 통해 테리가 발생할 경우 손실을 보상하며, 피해 보상을 위한 재원이 부족할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영국 정부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동시에 민간시장에서 재보험을 구입함⁴⁷⁾

○ 영국 로이즈(Lloyd's)는 팬데믹과 관련하여 기업휴지보험 보장 공백의 해결을 위한 3단계 방안을 제시하였음⁴⁸⁾

- 동 제안들은 주로 감염병을 포함하는 물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사고로 인한 영업중단 손실(NDBI)을 보장할 방안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사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보험회사가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중단 리스크를 통합 관리하며 정부가 안전장치로서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되어 있음
- 첫 번째 제안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영업중단 손실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보험회사들이 ReStart로 불리는 보험 풀을 구축하여 정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 보험을 인수할 여력을 확보하는 계획임
 - ReStart에서 보험회사들은 사업자들에게 지불 가능한 보험상품을 공급해야 하며 리스크 풀링, 리스크 허용한도 설정, 사업 및 지리적 다각화 등의 다양한 노력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수행해야 함
- 동 제안은 영세한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손실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며 사업자들이 보험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 두 번째 제안은 중장기적으로 Recover Re로 불리는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코로나 19나 장래에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한 영업중단 손실에 대해 신속한 보상을 공급할 재보험 풀을 보험회사와 정부 간의 협력을 통해 구축하는 방안임
 - Recover Re는 사업자인 보험계약자가 다년에 걸쳐 계속적으로 납부하는 보험료를 통해 자금이 조달되며 중도에 보험료의 변경이 가능하고 해약 시에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47) 2019년 말 기준 Pool Re는 67억 파운드의 자금을 축적하고 있으며, 2020년에 담보력의 확충을 위해 24억 파운드 규모의 재보험을 민간시장에서 구입하였음(Ralph 2020)

48) Lloyd's(2020)

- 동 프로그램은 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의무보험이나 장기계약의 형태로 공급되도록 제안됨
- 정부는 Recover Re가 충분한 자금을 축적하기 전에 초기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야 하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수행함
- 세 번째 제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무형의 영업중단 손실로 인해 발생하는 시스템적 리스크(Systemic NDBI Risk)⁴⁹⁾의 보상을 위해 민영 보험회사들과 정부가 협력하여 Black Swan Re로 불리는 재보험 풀을 구축하는 방안임
- Black Swan Re는 보험회사들이 공동으로 구성한 재보험 풀을 통해 손해를 인수하고 보상하며, 손해액이 보험 풀의 지급능력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나머지 손실을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 Recover Re가 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한 영업중단 손실의 신속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Black Swan Re는 모든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미래에 감염병을 포함한 체계적 무형리스크가 가져올 광범위한 피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동 제안하에서 민영 보험회사들이 보상해야 할 보험금의 규모는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손실 경험에 근거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게 됨
- 동 프로그램은 정부가 계속 보장을 공급한다는 추정으로 인해 보험가입률이 낮아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의무보험 형태로 공급되도록 제안됨

다. 프랑스

- 프랑스 정부는 지자체 및 기업과 4,500억 유로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여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 지원기금을 통해 실업급여 지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을 시행해 왔음
- 프랑스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소득이 전년도 70% 이하일 경우 최대 1,500유로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고 사회보험료(Cotisations)의 납부를 연기해 주었음

49) 팬데믹 손실은 금융시장의 손실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이는 보험산업뿐 아니라 전체 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효과를 미치는 시스템적 비물적 기업휴지 리스크(Systemic NDBI Risk)를 초래할 수 있음

-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영업중단 조치를 경험한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게 기존 소득의 84~100%를 실업급여로 지원하고, 전년도 기준 연간 소득액의 25%까지 국가 보증으로 은행에서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동년 10월 프랑스 정부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200억 유로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정부의 대출지원과 대출보증 기간을 연장하였음

○ 2020년 5월 프랑스 건전성감독청(ACPR)은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중단 손실을 기업휴지보험을 통해 보상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21개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된 220개 종류의 기업휴지보험 약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음

- 동년 6월에 발표된 결과는 보험약관 중 2.6%만이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한 영업 손해를 보상대상에 포함하였고, 4.1%는 보상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논란의 여지가 있었으며, 나머지 93.3%는 보장대상이 아닌 면책조항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었음
- 이러한 이유로 만약 보험회사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영업손실의 보상 여부에 대해 보험약관을 보험계약자들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계약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이 약관의 해석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려야 하는 실정에 있음

〈표 III-8〉 프랑스 건전성감독청(ACPR) 기업휴지보험 조사 결과

구분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중단 손실보상 여부	
기업휴지보험 보험계약 수	1,134,690건	
코로나19로 발생한 영업중단 손실의 보상 여부	보상대상	2.6%
	보상대상이 아님	93.3%
	보상대상 여부가 불명확함	4.1%

자료: ACPR(2020)

○ 현재 프랑스 보험회사인 AXA손해보험은 보험약관이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중단 손실을 보상해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소규모 레스토랑 사업자들과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음

- 2020년 프랑스 법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영업폐쇄 조치로 발생한 영업손실 보상을 위해 소규모 레스토랑이 보험회사 AXA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정부의 강제폐쇄명령이 보험계약상 담보 리스크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함

- 동년 5월 파리 상업법원은 AXA가 판매한 기업휴지보험 약관에 감염병이 명확하게 면책으로 규정되지 않은 이유로 면책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레스토랑 소유주에게 2개월의 영업손실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을 판결함
- 동년 6월 마르세유 상업법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영업폐쇄 조치로 인해 발생한 영업중단 손실보상을 위해 소규모 레스토랑이 AXA를 상대로 제기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AXA가 레스토랑 소유자에게 66,385유로를 지급하도록 판결하였고 AXA는 이에 대한 항소를 제기함
- 동년 12월 엑상프로방스 항소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AXA가 보험약관에 감염병과 같은 직접적인 손실이 아닌 원인으로 발생하는 영업 손해에 대한 면책 조항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AXA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음

○ 프랑스 보험협회(FFA: Fédération Française de l'Assurance)는 2020년 4월 프랑스 정부와 함께 정부·보험업계 공동 보상 방안에 대해 검토를 시작하고 6월 12일에 예외적 거대재해 시스템(CATEX: Catastrophe Exceptionnelles)의 구축에 대한 방안을 발표함

- CATEX는 감염병, 테러리스트 공격, 대규모 자연재해 등 예외적 대재해 발생 후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영업정지로 인해 발생한 직접 또는 간접손해의 신속한 보상을 목적으로 함
 - CATEX의 사업 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프랑스 기업이 가입한 화재보험에 의무적인 특약의 형태로 공급되며, 기존에 체결된 상업용 재물보험이나 기업휴지보험의 보상에 특약의 형태로 가입하도록 함
 -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해는 화재보험 또는 기업휴지보험에서 담보하며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손해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영업정지나 영업폐쇄 기간에 비례하여 정액보상을 지급하는 탄력성 자금의 형태로 보상이 지급됨
 - 보상은 행정명령에 의해 일정한 지역에서 특정한 기간 동안 영업중지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 손실에 대해 지급되며, 행정처분을 받는 지역 외에서도 경제활동의 감소로 인해 발생한 간접적인 손실에 대해서 이루어짐

○ CATEX하에서 보험회사와 재보험 회사는 20억 유로의 연간 한도를 제공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자연재해 재보험을 맡은 국영재보험회사(CCR: Caisse Centrale de Réassurance)를 통해 보상을 제공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 CATEX는 기존의 국영보험회사(CCR)가 운영하는 자연재해보험과 공동재보험 풀

형태인 테러보험(GAREAT) 등과 유사한 보상구조를 활용하면서 보장범위를 감염병으로 확장하여 신속하게 사업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함

- 프랑스의 자연재해보험은 1단계에서는 비례재보험 방식으로 국영재보험회사(CCR)에 출재하고 2단계에서는 보유리스크에 대해 초과손해를 방식으로 CCR에 출재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 테러보험(GAREAT)은 보험가액(2천만 유로)을 기준으로 리스크를 거대 리스크, 중규모 및 소규모 리스크로 분류하고 보험회사들은 소규모의 손해, 민영 재보험회사들은 중간 규모의 손해, 정부는 대재해로 인한 손해를 분담하는 구조임
- CATEX에서 보험료는 매출액이 10만 유로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는 업종에 상관없이 고정요율이 적용되며 매출액이 2천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천만 유로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수준에서 상한이 적용됨
- 보상은 일시보상금(Lum-sum payments) 형태로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후 20~30일 이내에 지급되며, 사업자들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정부의 보조금을 통해 재원이 조달됨
- CATEX는 최대 3개월 동안 정부의 폐쇄명령으로 인한 영업중단에 대해 개별회사 또는 사고당 50만 유로를 최대한도로 지급하며 영업정지 기간 동안 50% 이상, 전년 대비 8% 이상의 수입이 감소한 경우를 지급조건으로 함

라. 독일

○ 독일은 코로나19의 확산이 시작된 이후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경감시킬 목적으로 2020년 3월에 근로자의 소득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공포하였음

- 이 중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중단 손실과 관련하여 조업단축수당에 대한 법률⁵⁰⁾의 개정은 2021년 12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기존의 조업단축 수당 조건들을 완화하여 지급대상을 확대하였음
- 기존 규정은 기업이 경제적 요인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노동 시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직원 소득 감소분의 60%(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67%)를 12개월까지 정부가 보상하도록 하였음

50) Gesetz zur befristeten krisenbedingten Verbesserung der Regelungen für das Kurzarbeitergeld v.13. März 2020(BGBl. I S. 493)

- 개정 법률은 조업단축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조업단축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종업원 수가 전체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10% 이상으로 완화하였음
- 영업단축 발생 시 사업자가 지불하는 사회보험료의 일부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업단축 수당자의 대상을 파견근로자까지 확대하였음

○ 독일 정부는 경제안정기금 조성 및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였음

- 2020년 3월에 조성된 경제안정 기금은 총 5,400억 유로 규모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보증, 대출금 상환지원, 영업비용 손실보상(최대 13,500유로) 등의 지원사업을 위해 사용되었음
- 동년 6월에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영업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총 230억 유로의 재난지원금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급되었음

○ 최근 독일의 보험협회(GDV: Gesamtverband der Deutschen Versicherungswirtschaft)가 중심이 되어 향후 팬데믹으로 인한 사업중단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하는 감염병 리스크 기금의 창설이 검토되고 있음

- 독일보험협회(GDV)가 2020년 6월 발간한 정책제안서(Green paper)⁵¹⁾는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중단 리스크의 보상은 민영 보험회사 단독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동 기금은 기본적으로 사업자들, 보험회사, 재보험회사, 자본시장에서 대재해 채권(Cat-bonds)의 사용과 같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 축적될 수 있으나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추가 자금의 조달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음
- 팬데믹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때 동 기금에 참여하는 보험회사, 재보험회사가 자본시장에서 대체리스크 수단을 통해 지급할 보상금의 한도는 미리 정해져야 하며 민간 부문의 한도를 초과하는 손실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함
- 기금의 자금 조달을 위한 대재해 채권의 경우 발행자인 보험회사와 투자자 간의 리스크 분배가 중요하므로 대재해 채권의 표면이율(coupon rate)이 투자자가 보유하는 리스크의 크기와 비례하게 설계되도록 함

51) GDA(2020)

- 보험회사들은 보험금 심사 및 지급결정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므로 기존의 고객관계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상의 공급을 돕는 역할을 주로 담당함
- 동 제안서에서 보상기금은 보험계약자들이 기존 보험상품에 특약형태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단일보험료 모델(flat-rate levies model)이나 리스크 비례보험료 모델(risk-based model)의 2가지 방안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음
 - 단일보험료 모델(flat-rate levies model)은 사업자들이 고정된 액수의 기금을 보험료 형식으로 납부하고 감염병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장기금에 의해 축적된 자본의 정도와 보장기금이 가입한 재보험 보장에 근거하여 고정된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함
 - 리스크 비례보험료 모델(risk-based model)은 사업자들이 자신의 사업 규모나 상황을 감안하여 보상받기를 원하는 수준의 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하며 수수료는 감염병이 발생하는데 걸리는 시간인 재현기간(return period)⁵²⁾을 근거로 산정됨
- 보상에 대한 지급은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을 선언하거나 전염성 질병으로 독일 정부나 독일 공중보건기구(Robert Koch Institute)가 지역적 전염병을 선언하는 경우에 이루어짐
 - 동 기금에 일정 금액을 납부해 온 사업주들은 팬데믹으로 인한 정부의 명령으로 영업손실을 경험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영업중단을 경험하지는 않았으나 팬데믹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사업주에 대해서도 보상을 지급할지의 여부는 아직 논의 중에 있음
 - 동 기금의 규모는 약 100억 유로(약 13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됨
- 2020년 4월 독일의 바이에른주의 경제부, 보험회사들과 보험협회는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기 보다는 기존 보험계약의 연장에서 기업휴지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레스토랑과 호텔 등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초래된 영업손실을 공동으로 보상하기로 합의함
- 바이에른 주정부와 보험업계는 호텔 및 레스토랑 산업의 운영에 대한 평균비용을

52) 재현기간은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X년 이내에 발생하는 것(one loss in X years)을 의미하며 리스크 비례보험료 모델을 설계할 때 이를 결정하도록 제안하고 있음. 사업자들은 보상의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100년과 같은 긴 재현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정부는 보상의 지급이 단기간에 이루어져 기금이 적정수준 이하로 감소한다면 보상기금을 조달해야 할 책임을 가짐

근거로 하여 단기 근로수당 및 연방 및 주정부의 긴급 지원과 같은 공적지원으로 영업손실의 약 70% 정도를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 중 10~15%의 손실에 대해서 보험회사들이 자발적으로 보상을 하는 데 동의함

- 이는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중단 손실에 대해 보험약관상의 보험회사의 책임유무에 관계없이 정부의 공적 지원이 보상하지 않는 부분을 민영 보험회사가 자발적으로 보충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마. 이탈리아

○ 유럽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가장 받은 국가 중 하나인 이탈리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영업중단과 축소로 영향을 받는 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치를 실시하였음

- 이탈리아에서 2020년 5월 발표된 기업구제조치(Decreto Ristori)는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3분의 2 이하로 감소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매출액 규모 및 감소 정도에 근거하여 수당을 지급⁵³⁾하도록 하였음
-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기업들은 사회 보험료 등의 납부를 2021년 3월까지 재조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매출이 2억 5,000만 유로 이하의 기업을 대상으로 주 사업세(IRAP)의 일부를 면제하였음
- 또한 코로나19의 확산을 줄이기 위해 사회보험제도인 통상소득보장급부(CIO: Cassa Integrazione Ordinaria)를 통한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발생한 영업정지 및 영업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함
 - 통상소득보장급부(CIO)는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영업중단이 발생하여 노동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는 소득보장제도로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의 중단이나 단축을 경험한 사업주들은 최장 6주까지 종업원 급여의 8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음
 - 여가·관광사업과 같이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산업에 대해서는 다른 산업에 비해 더 긴 기간 동안 통상소득보장급부를 받을 수 있음

53) 2019년과 2020년 동월의 매출 차이에 전년도 매출 40만 유로 이하의 기업은 20%, 40만 유로 이상 100만 유로 이하는 15%, 100만 유로 이상에서 500만 유로 이하는 10%의 비율을 곱한 금액이 지급됨

- 2020년 이탈리아 정부는 재난안전 지원금의 지급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였음
 - 이탈리아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상환 유예, 신용보증 지원 확대, 대출지원 등을 목적으로 4차례(3, 4, 5, 10월)에 걸쳐 재난안전 지원금을 지급하였음
 - 또한 동 기금의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사태 선언으로 영업중단을 경험한 소상공인들은 세금과 사회보장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임대료의 일정부분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을 받게 되었음
- 이탈리아에서 기업휴지보험시장은 활성화되지 않아 대부분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영업중단 리스크에 크게 노출되어 있고,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물리적 손해로 인해 발생한 영업손실만을 보상하고 있는 실정임
 - 이탈리아 보험중개사협회(ABIA)의 조사⁵⁴⁾에 의하면 이탈리아의 중소기업의 약 3% 정도만이 기업휴지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나타남
 - 이로 인해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영업중단을 경험한 많은 소매상, 식당, 술집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영업중단의 결과로 일어난 손실을 보험을 통해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됨
-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탈리아 보험회사들은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중단 손실의 보상을 위해 기존 보험상품 보장범위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함
 - 이탈리아의 일부 보험회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중단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상업용 재산보험 약관에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한 영업중단 손실을 포함하도록 보장범위를 확대함
 - 구체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행정명령에 의한 영업중단이 발생할 경우 최대 15일까지 종업원의 일당을 지급하도록 함

3. 소결

- 본 장에서는 해외 주요국에서 팬데믹 리스크의 보장을 위해 민영 보험회사들과 정부에서

54) AIBA(2020)

진행되고 있는 논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음

- 미국에서 팬데믹 영업중단 리스크를 보상하기 위해 제안된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민영 보험회사와 정부 간의 공·사협력을 통해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한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영업중단 손실을 보상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 팬데믹 리스크 재보험(PRRP), 사업연속성연합(BCC), Chubb과 Zurich의 제안은 감염병으로 인한 영업중단 손실에 대해 보험회사가 일정한도의 손실을 보상하고 정부는 초과손실에 대한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방안을 제안함
- 그러나 정부와 보험회사 간에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중단 리스크의 분담방식과 보상을 위한 구체적 추진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아 향후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실정임
 - 지금까지 제안된 프로그램들은 보험회사의 참여방식, 손실보상의 내용, 보험료의 산정방식, 보험금의 지급방식, 리스크 완화 조항의 포함 여부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유럽 국가들의 경우 팬데믹 관련 영업중단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제시되어 왔음

- 유럽연합(EU) 차원에서는 보험회사, 재보험회사 또는 대체위험전가수단, 개별 국가, EU로 구성된 4계층 보상시스템을 통해 팬데믹 영업중단 리스크를 공동으로 분담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음
 - 하지만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 사이에 보험보급률, 노동·경제 환경의 차이는 통합적 리스크 관리체계의 구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유럽 개별 국가들에서는 재난지원금과 사회보장급부의 형태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중단 손실에 대해 보상을 추진해 왔으며 다양한 형태의 팬데믹 영업중단 보험의 도입이 제안되어 왔음
 - 영국과 프랑스는 테러리스크에 대한 정부의 재보험 풀을 기본 모델로 하는 팬데믹 리스크 재보험 프로그램(영국: Pandemic Re, 프랑스: CATEX)의 설립을 계획하고 있음
 - 독일과 이탈리아 같은 국가에서는 보험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약관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정부의 공적 지원이 보상하지 않는 부분을 보충하거나 보험약관의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중단 손실을 보상하였음

- 한편 영국의 로이즈(Lloyd's)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팬데믹 영업중단 리스크 뿐 아니라 팬데믹의 확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적 리스크의 보상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였음

〈표 III-9〉 유럽 국가들의 팬데믹 리스크 보장을 위한 보험 프로그램

구분	EU 팬데믹 리스크 보상체계 (유럽보험연금감독청, EIOPA)	CATEX (프랑스보험협회, FFA)	감염병 리스크 기금 (독일보험협회, GDV)	ReStart (로이즈)	ReCover Re (로이즈)	Black Swan Re (로이즈)	이탈리아
제공방식	보험상품 (다른 보장과 결합하여 판매)	보험상품 (상업용 재물보험이나 기업후지보험증권에 특약으로 가입)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중단(NDBI)	보험상품	보험상품	보험상품 (다년 계약의 단독보험상품)	보험상품 (보험약관 보장범위 확대)
보장위험 (Peril)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중단(NDBI)	비상사태(팬데믹, 테러, 사이버공격)로 인한 영업중단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중단(NDBI)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중단 (NDBI)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중단 (NDBI)	시스템적 무형리스크에 대한 영업중단 (Systemic NDBI)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중단
보험 계약자	중소기업	중소기업	제약 없음	중소기업	중소기업	제약 없음	중소기업
지급조건	불명확함	정부 행정명령	WHO 또는 정부 행정명령	불명확함	불명확함	불명확함	정부 행정명령
정부참여	유럽연합 소속 각국 정부 및 유럽연합	국영재보험회사 (CCR)	재채보험 (Retrocession)	없음	보험금 지급 불능에 대한 정부의 보증	재보험 풀에 대한 정부의 안정장치 제공	없음

자료: OECD(2020)

IV

팬데믹 영업중단 보장을 위한 방안

- 팬데믹으로 발생한 영업중단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앞 장에서 논의된 해외국가의 사례를 참고하여 아래와 같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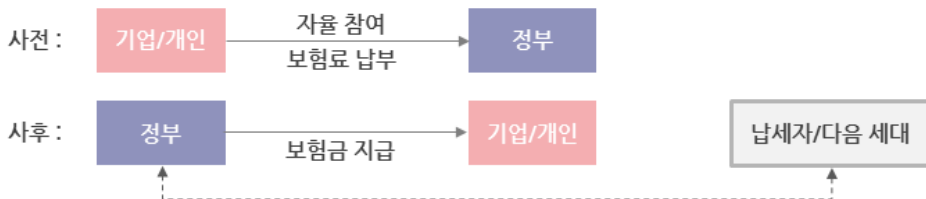
1. 정부제공 팬데믹 영업중단보험

- 팬데믹 영업중단 보장을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 정부가 원보험회사로서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중단 손실에 대해 직접 보상 제공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미국의 국가홍수보험 프로그램(NFIP)이나 최근 제안된 사업연속성보험 프로그램(BCPP)과 같은 국영보험 방식은 감염병으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해 정부가 직접 보상을 제공하여 팬데믹 영업중단보험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할 수 있음
 - 보험회사들이 자본금 부족이나 지급불능 리스크 등의 이유로 기업휴지보험을 통해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손실을 인수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합한 방식임
 - 정부는 사업자로부터 보험료를 수취하고 충분한 보험료를 적립하기 전에 팬데믹이 발생할 경우, 피해보상을 위해 정부의 재정을 투입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인수한 리스크의 전부나 일부를 국제 재보험시장으로 분산할 수도 있음
 -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가입자가 전액 부담하나, 일부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할인된 정부보조 보험료를 적용하며 정부가 최종적인 지급보증을 하는 재보험자의 역할을 담당함
 - 정부는 보험을 직접 판매하고 손해사정, 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할 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나 팬데믹은 발생 빈도가 낮은 리스크이기 때문에 민영 보험회사에 이에 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⁵⁵⁾

55) 미국 국가홍수보험 프로그램(NFIP: 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에서 보험회사는 WYO(Write Your Own) 프로그램을 통해 중개인으로서 홍수보험의 판매, 손해사정, 보험료 수납 등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며 연방정부는 보험금 지급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게 됨

- 국가 원보험 방식은 정부가 직접 보험을 공급함으로써 정책목표의 달성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또한 정부가 보장의 범위와 보험료를 결정하고 보험회사들이 보험료 수납 및 보험금 지급 등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프로그램의 운영이 복잡하지 않고 재보험의 계약과 관련한 거래비용이 낮음
- 그러나 미국 국가홍수보험 프로그램(NFIP)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보험가입률 저조, 리스크 완화조치를 위한 불충분한 인센티브, 부적절하게 낮은 수준의 보험료 부과, 과도한 정부보조금, 높은 부채 등의 문제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함⁵⁶⁾
- 국영보험 방식은 보험회사의 참여를 배제하여 중장기적으로 보험시장의 적응 및 혁신을 저해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상의 비효율로 인한 적자의 누적으로 인해 정부가 사업을 중단하거나 철수할 경우 혼란이 초래될 수 있음

〈그림 IV-1〉 국영보험을 통한 영업중단보험 제공방식



자료: Hartwig et al.(2020)

2. 공·사협력 팬데믹 영업중단보험

- 두 번째 방식은 공·사협력을 통해 민영 보험회사들이 감염병으로 인한 영업중단 리스크를 인수하여 이를 일정한 한도로만 보유하고, 이를 초과한 부분은 정부가 운영하는 국가 재보험 기금으로 출재하는 방식임
- 현재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에서 제안되고 있는 방안들은 대부분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영업중단손해에 대해 보험회사들이 일정 정도의 손실을 부담하고 정부는

56) 이러한 문제점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국가 원보험 방식이 계약자보호를 위해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려는 정치적 압력에 크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임(Kousky & Shabman 2014)

초과손실에 대한 재보험을 제공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 미국의 PRIA, 영국의 Pandemic Re와 Recover Re, 프랑스의 CATEX, 독일의 감염병 리스크 기금 등은 민간 부문의 인수능력과 보험금 지급능력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의 한도를 정하고 한도를 넘어서는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보험자의 역할을 하며 리스크를 분담하는 형태로 되어 있음

○ 정부와 민영 보험회사 간의 협력을 통해 팬데믹 영업중단보험을 공급할 구체적인 방안으로 미국 사업연속성 연합(BCC)과 Zurich가 제안한 선택형 재보험 방식과 Chubb가 제안한 기업의 규모에 따른 보상이원화 등도 고려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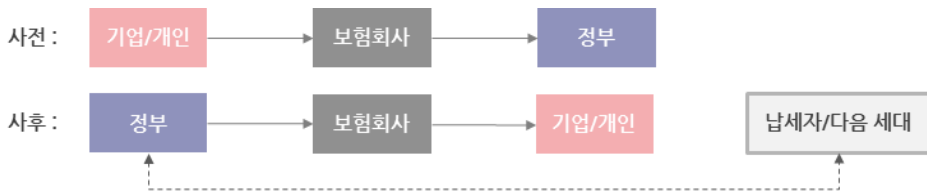
- 선택형 재보험 방식은 보험회사들이 계약인수역량에 따라 리스크의 보유와 출재 비율을 결정할 수 있어 보험회사들이 자사의 상황에 맞는 리스크 관리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음
- 보상의 이원화는 소규모 기업의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지수형 방식을 통해 신속한 보상을 할 수 있으며, 중·대기업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와 정부 간의 리스크 배분방식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공·사협력을 통한 방식은 정부가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해 정부가 재보험의 공급을 통한 안전장치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손실을 제한하고 보험공급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음

- 국가 재보험 방식은 팬데믹 발생 시 보험회사의 지급능력 부족으로 인한 기업휴지 보험 공급 축소 또는 시장에서의 철수 등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음
- 정부와 보험회사 간의 공·사협력은 민영 보험회사의 적극적 시장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계약자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보험상품을 제공할 수 있음
 - 보험회사들이 팬데믹으로 발생한 영업손실에 대해 일정 부분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그들이 리스크에 대해 직접 이해관계를 갖고 행동(skin in the game)하게 하여 보험회사들이 건전한 경영활동을 수행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
 - 민영 보험회사의 참여는 보험회사가 보유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계약자들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그들이 사전에 리스크 완화 조치를 수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할 피해의 규모를 줄일 수 있음
 - 국가 재보험 방식은 정부의 재정리스크의 노출을 제한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재보험의 제공방식과 수준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동 방식의 단점으로는 재보험계약과 관련된 거래비용이 높을 수 있고 단기적으로 정부의 재정투입이 불가피하다는 문제가 있음
- 또한 보험요율이 적정수준보다 낮은 경우 민영 보험회사의 저조한 참여로 국가의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시장변화로 민영 보험회사의 참여 비중이 변동하는 경우 국가 재보험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울 수도 있음

〈그림 IV-2〉 팬데믹 리스크 재보험 프로그램(PRRP) 구조



자료: Hartwig et al.(2020)

3. 패러매트릭 보험(Parametric Insurance)

○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중단 리스크의 보험 보장이 공급될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리스크 전가의 방법으로 패러매트릭 보험이 주목을 받고 있음

- 패러매트릭 보험은 지진, 홍수 등의 자연재해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같이 손실이 광범위하고 직·간접적이어서 그 규모를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 객관적 측정이 가능한 지표를 사전에 정하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임
- 패러매트릭 보험은 재물의 손해를 동반하지 않는 영업중단(NDBI) 리스크를 담보할 수 있고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보상을 가능하게 하며, 감염병의 리스크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책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⁵⁷⁾
 - 패러매트릭 보험에서 보험금의 지급조건인 트리거(trigger)는 신뢰할 만한 통계에 근거하여 설정된 지표들이 일정한 값을 초과하거나 보험계약자인 사업자가

57) 이에 대한 예로 영국 런던에서 매년 개최되는 오랜 권위와 전통을 자랑하는 세계적 테니스 대회인 윌블던 대회를 주관하는 올잉글랜드 클럽(All England Club)은 2003년 SARS의 발생 이후 팬데믹이 대회의 개최에 미칠 수 있는 리스크임을 깨닫고 이후 패러매트릭 보험에 가입하여 매년 200만 달러의 보험료를 지불하였음. 작년에 코로나 19로 인해 대회가 취소되자 올잉글랜드 클럽은 약 1억 4천 달러의 보험금을 수령하였음

통제할 수 없는 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두 가지 경우에 발동될 수 있음

- 패러매트릭 보험은 고객의 니즈에 따라 보험금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으며, 정해진 조건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로 인해 보험계약자들은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고 보험회사들은 운용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패러매트릭 보험을 통한 팬데믹 영업중단 리스크 보장은 보상의 수준과 관련된 문제와 도덕적 해이 발생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음

- 패러매트릭 보험은 손해가 발생할 때 손해사정 없이 보험계약에 약정된 금액만큼의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실제 손해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 피보험자의 보상이 과소 또는 과대계상될 수 있는 문제(basis risk)가 발생할 수 있음
- 팬데믹 보험의 발동요건이 정부의 행정조치에 의해 이루어질 경우 정부에 의해 공급되는 자금의 사정에 근거하여 정부가 행정조치의 시기와 방법을 정할 수 있으므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

○ 팬데믹 리스크에 대응하는 패러매트릭 보험상품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18년에 보험중개회사 Marsh는 감염병 모니터링 업체인 Metabiot가 개발한 유행성 리스크 지표를 사용하여 재보험회사 Munich Re와 공동으로 감염병에 대한 영업중단 손실을 보장하는 PathogenRX를 개발하였음
 - PathogenRX는 감염병으로 인해 발생한 매출액 및 영업이익 감소, 추가비용 등의 손해를 보상하는 고객맞춤형 보험상품임
 - 동 상품은 미국의 여가산업과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대상으로 계약에 따라 특정 감염병이나 지역, 계절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조건(double triggers)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임
 - 예를 들면, 대상 시설이나 고객 또는 공급망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지역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동시에 강제폐쇄 조치가 내려지는 등 2개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보상이 자동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짐
 - 그러나 높은 보험료의 부담 등으로 인해 PathogenRX의 판매실적은 현재 매우 부진한 실정임⁵⁸⁾

58) 2020년 11월 미국 보험감독자협의회(NAIC) 보고서에 따르면, PathogenRX의 판매실적은 2018년 5월 출시 이후 아직까지 단 한 건에 그치고 있음

〈표 IV-1〉 Marsh의 PathogenRX 상품구조

구분	PathogenRX
보험회사	Marsh 보험중개사 * 재보험사 Munich Re, 기술회사 Metabiota와 협업
보상하는 손해	- 감염병으로 인한 총이익 손실(Loss of gross profit) - 추가비용(Extra Expense) 등
보상조건	미리 정한 트리거 만족 - 보장지역 내 감염병 발생 - 사망자 수가 정해진 수준 초과 - WHO가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 정부의 영업중단 명령 등
가입대상	- 여행 및 관광업 -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 고등교육기관, 공공기관 - 도소매업, 제조업 등
보상구조	Metabiota의 Pathogen Sentiment Index를 활용해 재정손실을 추정하여 보상

자료: Marsh PathogenRX

- 최근 미국 보스턴에 본사를 둔 보험중개회사 One80는 감염병 리스크에 대응하고 사업연속성 및 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상품인 Pandemic Protector를 출시하였음
 - 동 상품은 보상지역 내에서 감염병에 걸린 사람의 수가 정해진 수준을 초과할 경우, 세계보건기구(WHO)가 공공보건 응급상황을 선포할 경우, 정부의 영업중단 명령이 시행될 때 등 3가지 보상 발동요건(3 triggers)을 가지고 있음
 - 동 상품은 다양한 업종의 기업에 대한 영업손실을 대상으로 하며 보험계약자는 감염병 리스크 관리 전문가로부터 감염병으로 인한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는 사전대응 대책 수립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음
 - 동 보험상품은 피보험자인 보험계약자의 니즈에 따라 발동요건(trigger)들을 유연하고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으며, 총 보상한도는 1억 달러이며 최소 보험료는 연간 35,000달러 수준임

〈표 IV-2〉 One80의 Pandemic Protector 상품구조

구분	Pandemic Protector
보험회사	One80 보험중개사
보상하는 손해	감염병으로 인한 총이익 손실(Loss of gross profit)
보상조건	미리 정한 트리거 만족 - 보장지역 내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정해진 수준 초과 - WHO가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 정부의 영업중단 명령 등
가입대상	- 여행 및 관광업 - 소매업, 제조업 - 건설업, 광산업 - 정부기관 등
보상구조	트리거 만족 시 보험금 일부를 임시 지급하고, 추후 손해사정을 통해 보완지급
보상한도	최소 1백만 달러~최대 1억 달러
보험료	최소 35,000달러(평균 보험료 15만 달러 이상)

자료: One80 Pandemic Protector

- 보스턴에 근거를 둔 보험회사인 Machine Cover는 팬데믹으로 인한 도시봉쇄와 사업중단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할 보험상품을 2021년 상반기에 도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음
 - 동 상품은 식당, 백화점, 미용실, 자동차 판매점 주위 고객의 왕래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일정한 지역에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정해진 지표의 수치보다 낮아진 경우 이유에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상을 지급함

○ 패러매트릭 보험이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중단 리스크를 담보할 있는 방안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감염병에 대한 보다 정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개발해야 함

- 이를 위해 보험회사들은 감염병의 발생 메커니즘 및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정확한 분석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실제 손해액과 보험금의 차이(basis risk)를 줄여 추정 피해액이 실제 손해액과 근접하게 추정될 수 있도록 향후 팬데믹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정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패러매트릭 모델의 정확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들은 감염병 리스크에 대한 정확한 통계의 집적을 위해 정부기관들과 관련 정보를 상호 긴밀하게 공유해야 할 필요가 있음

4. 팬데믹 채권(Pandemic Bond)

○ 자본시장에서 팬데믹 채권과 같은 대체리스크 전가 수단의 사용은 영업중단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팬데믹 채권은 대규모 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의 인수능력 이상의 추가적 담보력이 필요할 때, 초과리스크를 자본시장을 통해 투자자에게 전가함으로써 대재해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보상할 수 있음
- 팬데믹 채권은 보험회사가 채권을 발행하여 판매나 기금운용 등의 업무를 특수목적회사(SPC)⁵⁹⁾에 위임하고, SPC는 보험회사에서 받은 보험료와 채권을 판매한 기금을 자본시장에 투자하고 수익을 얻어 채권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고 팬데믹이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 팬데믹 채권의 수익금은 별도의 신탁계정을 통해 국채나 AAA 우량 등급의 회사채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되므로 재보험회사의 파산으로 인한 지급불능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음
 - 팬데믹 채권은 자본시장이나 기존의 투자자산과 상관관계가 낮으므로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들(주로 기관투자자)은 투자리스크를 분산하고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음
- 팬데믹 채권은 대규모의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보험금의 지급을 가능하게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보상을 위한 정부의 재정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음

○ 2020년 4월 세계은행(World Bank)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국제개발협회(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가 지원하는 저소득 국가들에게 발생한 피해 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팬데믹 채권(Pandemic Bond)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였음

- 2017년 세계은행은 저개발 국가에서 팬데믹 발생 시 자금의 조기 지원을 통해 감염

59) 특수목적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는 주로 원수사, 재보험회사, 보험브로커 회사, 투자은행들에 의해 설립되어 투자회사 또는 재보험회사 형태를 가지며 팬데믹 채권을 발행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함

병의 확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팬데믹 긴급 자금지원 기구(PEF: Pandemic Emergency Financing Facility)를 설립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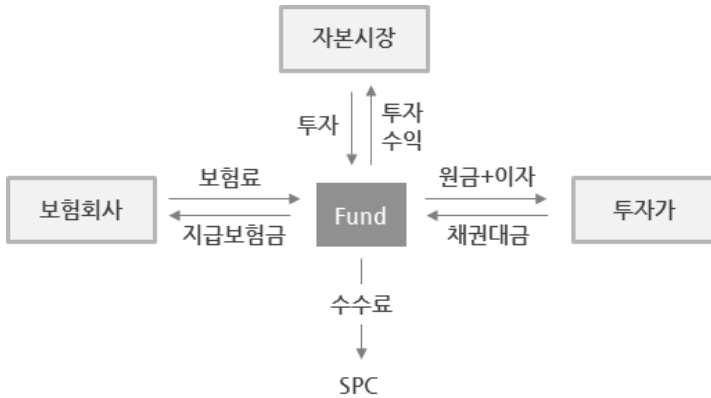
- 2020년 4월 팬데믹 긴급 자금지원 기구(PEF)는 코로나19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64개의 저소득 국가들에 팬데믹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 1억 9,600달러 규모의 자금을 팬데믹 채권을 통해 지원하였으나 동 채권은 보상 발동요건의 복잡성과 보상금의 지급 지연 등의 문제⁶⁰⁾를 드러내며 많은 비판을 받음
- 이로 인해 세계은행은 2020년 5월에 출범할 예정이었던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저개발 국가에 대한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한 2차 감염병 긴급 자금지원 기구(PEF 2.0)의 출범을 무기한 보류하였음

○ 팬데믹 채권과 관련된 복잡성과 보상금 지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고 투명한 발동요건(trigger)의 설정과 투자자의 리스크 분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팬데믹 채권을 통한 신속한 보상을 위해서는 보상 발동요건(trigger)에 대한 적절하고 명확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중요함
- 투자자에게 팬데믹 채권의 장점은 증권화된 리스크가 시장의 리스크와 낮은 상관관계를 가짐으로써 분산투자자 투자리스크를 감소시키는 데 있음
 - 그러나 실제로 팬데믹과 같은 대재해 리스크는 시장 리스크와 함께 움직이는 경향을 나타내 투자 수단으로써 팬데믹 채권의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음
- 팬데믹 채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방안의 하나로 정부발행 팬데믹 채권(Sovereign Pandemic Bond) 발행이 제기되고 있음(Richter & Wilson 2020)
 - 정부발행 팬데믹 채권은 팬데믹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광범위한 투자대상에 분산시킬 수 있어 상관관계가 높은 손실들에 대한 효과적인 리스크 배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정부 발행 팬데믹 채권이 팬데믹 리스크를 보상하는 효율적인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동 채권이 기관투자자들뿐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에게도 판매되도록 허용되어야 하며, 개인투자자의 손실은 표면이자(coupon) 금액으로 한정하고 투자로 인한 세제감면 혜택도 늘릴 필요가 있음

60) 팬데믹 긴급 자금지원 기구(PEF)는 저소득 국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감염자 수, 사망자 수, 바이러스 확산율, 지리적 확산 수준, 팬데믹의 지속 기간 등의 여러 발동요건이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보상을 지급하였음. 이로 인해 보상 조건들이 만족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저소득 국가들에서 팬데믹으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한 자금이 적시에 공급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음

〈그림 IV-3〉 팬데믹 채권 기본 구조



자료: Wagner, Fred(1998), p. 517

5. 소결

- 해외 국가들은 팬데믹으로 발생한 영업손실 보상을 위해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보험회사의 리스크 분산을 지원함으로써 민영 보험회사들이 보험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보험금 지급능력을 확보하도록 돕고 있음
 - 보험회사들은 정부가 안전장치 역할을 담당함에 따라 손실 제한 및 정부지원에 따른 사업성 제고로 인해 팬데믹 영업중단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과 원활한 보험지급이 가능하게 됨
-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중단보험의 제공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자국의 보험시장 및 자본시장의 발달 수준을 고려한 전략 수립이 필요함
 - 국가가 직접 팬데믹 영업중단보험을 제공하는 방식은 운영상의 비효율로 적자가 누적될 때 정부가 사업을 중단하거나 철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세금을 통해 부족분을 메우는 경우 납세자들에게 재정 부담을 전가시킨다는 문제가 있음⁶¹⁾
 - 또한 국내에서 패러매트릭 보험이나 팬데믹 채권은 감염병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분석모델의 구축과 금융시장의 성숙 및 제반 여건이 마련된 연후에야 실질적

61) 정부는 현재 93조 원, 내년에 100조 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할 정도로 매년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이러한 손실까지 재정을 통해 부담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국내 재난보험 시장은 민영 보험회사들이 보험상품을 운영하고, 정부는 일부에 대해 재보험을 공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팬데믹 영업중단보험의 운영을 위해 국가가 재보험을 지원하는 형태가 가장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국내에서도 팬데믹 영업중단 리스크 관리를 위해 민영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운영하며 일정 한도로 손실을 부담하고 정부는 민간 부문의 손실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재보험을 제공하는 공·사협력 방안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음

- 현재 재난의무보험인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국가 재보험⁶²⁾이 도입되었고, 농작물재해보험⁶³⁾과 같은 정책보험에서 정부가 재보험 형태로 리스크 분산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이를 모델로 하여 정부와 보험회사 간의 협력방안을 구축할 수 있음

- 국가 재보험 방식은 보험상품 판매에 있어 보험회사들의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가 보험금의 지급책임을 공유하여 보험회사의 손실을 제한함으로써 보험공급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62)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책임 풀(Pool)에 대한 국가 재보험 방식으로 되어 있으며 환경책임보험 풀의 손해를 구간별로 보험회사와 정부가 손실을 분담하는 구조로 손해를 140% 미만에 대해서는 환경책임보험 풀에 참여한 보험회사들이 참여비율별로 책임을 분담하며, 140% 초과 부분은 정부가 국가 재보험을 통해 책임을 지는 구조로 되어 있음

63) 농작물재해보험은 리스크의 정도에 따라 보험회사와 정부의 책임이 달라지는 구조로, 기준 손해를 이하인 통상 손해에 대해서는 민영 보험회사에 비례재보험(quota share)으로 출재하며 기준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초과손해율(stop loss) 방식의 국가 재보험이 적용됨

〈표 IV-3〉 팬데믹 영업중단보험 제공 방식 비교

방안	주요내용	장점	단점	해외사례
국영보험	• 정부가 팬데믹 영업 중단보험 직접 제공 • 보험 판매, 손해사정 등 운영을 민영 보험 회사에 위탁	• 정부가 직접적으로 정책 목적을 실현가능	• 장기적으로 보험 시장의 적응 및 혁신 저해 • 정부가 사업을 중단·철수할 경우 혼란초래	• 미국 국가홍수보험(NFIP) • 사업연속성보호 프로그램(BCPP)
국가 재보험	• 보험회사와 정부가 보험금의 지급책임 공유 • 보험회사의 대규모 팬데믹 리스크 노출 방지	• 민영 보험회사의 참여를 유도 • 재정리스크의 노출 제한 • 상황에 따른 보험료 조정 가능	• 단기적으로 정부의 재정지원 불가피 • 재보험 관련 비용이 높음 • 보험회사의 참여 정도를 결정하기 어려움	• PRIA • BCC • Pandemic Re • CATEX • Recover Re
패러매트릭 보험	• 보험금의 지급을 발동하는 일정 조건인 트리거(trigger)를 충족할 경우 보상	•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보상 가능	• 피보험자의 보상이 과소 또는 과대 계상될 수 있는 문제 존재	• PathogenRX • Pandemic Protector
팬데믹 채권	• 자본시장에서 재보험 회사와 일반투자자의 참여를 통해 팬데믹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	• 보험회사는 재보험 시장 이외의 자본시장에서 자연재해 리스크의 추가적인 담보력을 확보	• 복잡한 사건 발동 체계(trigger mechanism) • 보상지급의 지연	• Pandemic Bond

- 국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져 왔음
 - 국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요청에 의해 영업을 중단한 사업자의 손실에 대한 지원은 주로 정부에 의해 수행되어 왔으나 사업자들에 대한 보상의 시기가 늦고 금액이 피해를 복구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 기업의 영업중단에 의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기업휴지보험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추가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으나 실효성에는 의문이 있음
 - 국내 기업휴지보험은 감염병 관련 통계가 부족해 리스크율 등 보험요율 산정이 정확하지 않고, 피해 규모 등도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로 코로나19 사태의 영업 중단 손실은 보장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코로나19와 향후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할 영업중단 손실의 보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해외 국가들의 사례는 국내 보험회사와 정부에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중단 리스크 관리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
 - 해외 사례들은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이 초래하는 기업의 영업중단 손실은 국가의 지원 없이 민영 보험회사들이 단독으로 충분한 보상을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음
 - 따라서 정부와 보험회사 간의 공·사협력은 향후 새로운 팬데믹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음
 - 정부는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한 재정지원, 재보험 공급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보험회사들은 공·사협력 프로그램에 적극적 참여를 통해 정부의 재정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와 향후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와 보험회사 간의 공·사협력에서 정부가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음

- 정부는 팬데믹의 발생으로 인한 영업중단 손실의 보상에 있어 재보험 공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보험공급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함
 -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 재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마련, 팬데믹 리스크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관련 법률 제정 등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함
 - 정부는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며 감염병으로 인한 영업중단 손실을 보상하는 국가 재보험의 도입을 추진할 경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함
 - 농작물보험, 풍수해보험 등 정책성 보험의 경우와 같이 발생의 빈도가 낮지만 발생 시 큰 피해가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보험 가입률은 매우 낮은 상황임
 - 따라서 동 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자들에게 팬데믹 영업중단보험 활용의 효용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리스크 완화 조치의 사전 실시의 중요성 등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와 향후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와 민영 보험회사 간의 공·사협력에서 보험회사가 수행해야 할 역할은 다음과 같음
- 팬데믹 영업중단보험 상품의 판매와 손해사정, 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에 있어 보험회사의 인력, 판매채널 등 기존 사업구조와 사업노하우를 활용해야 함
 - 보험회사들은 영업중단보험의 보장대상, 면책사항 등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자인 사업자들에게 투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함
 - 보험회사들은 보험료 감면이나 리스크 기반 보험료(risk-based premium)와 같은 인센티브의 적절한 사용을 통해 사업자들이 사업연속성 계획이나 리스크 경감을 위한 사전 조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담당해야 함
- 정부와 민영 보험회사 간 공·사협력 방안의 성공적인 구축과 추진을 위해서는 논의해야 할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함
- 팬데믹 리스크를 보장하는 영업중단보험에 대해 사업자와 보험회사의 참여를 강제적 또는 자발적으로 할 것인가는 중요한 이슈임
 - 의무보험 도입을 위해서는 해당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이 크고, 사고 시 다수의 인명과 재물에 심각한 경제적 손해가 발생해야 하나 팬데믹은 사고의 발생이 예측가능하지 않아 의무보험을 통해 보상수단을 강제화하기가 용이하지 않음

- 사업자에게 보험을 자발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 허용한다면 팬데믹 리스크에 노출정도가 낮은 업종의 사업자들은 보험을 구입하지 않고 리스크가 높은 사업자들만이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재원부족으로 인한 불충분한 보상이 발생할 수 있음
- 보험회사에게 의무적으로 공급을 강제하는 것은 사업자의 보험상품 구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지만 일부 보험회사에 있어 자본 부족을 초래할 수 있음
- Zurich의 제안과 같이 사업자에게 100% 국가 재보험에 대한 선택권 부여는 위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한 부분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음
- 팬데믹 영업중단보험의 보상의 방법에 대해 지수형 보상(Parametric formular) 또는 전통적인 실손보상(Indemnity) 중 어떤 방식을 따를지는 중요한 이슈임
 - 지수형 방식은 피해에 대한 손해사정이 단순하여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으나 사업자들은 영업손실을 복구하기 위해 실제 손해보다 보상의 과대·과소 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실손 방식은 사업자들이 영업손실을 복구하기에 필요한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손실금액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보험금을 적시에 지급하기 어려움
- 보험료 책정을 단일보험료(uniform pricing)를 사용할지, 리스크 기반 보험료(risk based premium)를 사용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리스크 기반 보험료는 높은 보험료로 인해 사업자들이 팬데믹 영업중단보험 상품을 구매하는 비율을 낮추고 그들이 정부의 사업 폐쇄 명령에 강력하게 저항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단일보험료는 사업자와 공공보건 간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보장상품을 구매하는 비율을 높일 수 있으나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보험료의 산정에서 리스크 완화조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반영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음
 - 정부의 팬데믹 영업중단보험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리스크 기반 보험료 산정의 문제점을 해결할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
-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중단 피해에 대한 정의와 발동요건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필요함
 - 감염병 영업중단보험이 담보하는 리스크의 정의와 발동요건을 명확히 하는 것은

손해사정을 용이하게 하고 보상하는 손실의 범위를 제한하여 정확한 리스크의 측정과 보험료 산정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

- 이에 대한 방안으로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중단 손실보상에 대한 발동요건을 정부의 영업중단·폐쇄 혹은 건물 시설의 방역작업의 필요로 인한 손실로 명확하게 한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팬데믹 영업중단보험을 구입할 가능성은 팬데믹 피해에 대한 정부로부터의 직접보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보험을 구입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정부 보상의 지급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보험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팬데믹으로 발생한 영업손실의 대부분을 보상할 것이라는 기대가 존재한다면 사업자들이 팬데믹 영업중단 리스크를 보장할 보험을 구입하거나 사전에 리스크 완화 조치를 수행할 유인이 낮아지게 됨
 -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현재 미국의 일부 팬데믹 영업중단 손실보상 관련 제안들은 팬데믹 영업중단보험을 구입하지 않은 사업주들에게 향후 정부보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위와 같은 이슈들을 해결하고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중단 리스크에 대한 효과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와 민영 보험회사들은 충분한 대화와 토의를 통해 상호적인 원칙과 한계를 이해하여 공·사협력을 추진해야 함

- 정부와 민영 보험회사들은 어느 한 부문이 협상에서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각자의 입장만을 내세우기보다는 건설적 대화를 통해 상호 간의 한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협력해야 함
- 정부가 보험의 원칙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은 공·사협력의 필수조건이므로, 정부와 보험회사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조치를 만들어 낼 수 있을 때 공·사협력을 위한 적절한 해결책이 도출될 수 있음
 - 보험업계가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중단 리스크를 단독으로 담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성공적인 공·사협력을 위해서는 공적부분과 사적부분 모두에서 서로 다른 원칙들과 한계들이 먼저 이해되고 고려되어야 함

참고문헌

- 보험개발원(2020. 9), 『2020년 기업정보보험 통계분석보고서』
- 손민숙(2020), 「기업휴지보험 보험금 지급에 관한 해외 소송 쟁점 및 현황」, 『KIRI 리포트』, 보험연구원
- 송윤아(2020), 「기업의 조업중단 리스크 보장 현황과 과제」, 『KIRI 리포트』, 보험연구원
- 이기형(2011), 『국내기업들의 기업휴지보험 가입 효용성 평가』, 보험연구원
- 이기형·한상용(2009), 『기업휴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보험연구원
- 중소기업중앙회(2020. 9), 『코로나19 위기대응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실태조사』, p. 4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본통계」
-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 ACPR(2020), “Garantie « pertes d’exploitation » : l’état des lieux de l’ACPR”
- AIBA(2020), “L’impatto della crisi covid sul sistema italia e sull’evoluzione della domanda assicurativa (The impact of Covid-19 on 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 and personal accident covers in Italy)”, Rapporto di ricerca
- American Academy of Actuaries(2020), Actuaries: Coverage of Pandemic Risk Through Property/Casualty Insurance Could Be Designed Like Existing Federal Programs
- APCIA(2020), APCIA Releases Update to Business Interruption Analysis
-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2020), “Covid-19: Payouts of over £1.2 billion likely to be made to customers according to latest estimate from the ABI”
- Center for Insurance Policy and Research at NAIC and Department of Risk and Insurance at Wisconsin School of Business(2020), “Pandemic 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 Coverage: Insight from WSB Survey of Insurance Experts”

- EIOPA(2020), “Issued Paper on Shared Resilience Solutions for Pandemics”
- GDV(2020), “Green paper: Supporting the economy to better cope with the consequences of future pandemic events”, Gesamtverband der Deutschen Versicherungswirtschaft
- GlobalData(2020), “Insurers’ business interruption U-turn could lead to significant uptake in product”
- Hartwig, R., Niehaus, G. & Qiu, J.(2020), “Insurance for Economic Losses Caused by Pandemics”, *Geneva Risk Insurance Review*, 45, pp. 134~170
- IAIS(2020), “IAIS facilitates global coordination on financial stability and policyholder protection during Covid-19 crisi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 Insurance Journal(2020a), “Insurers, Agents Propose Pandemic Business Relief Plan: Plaintiffs Offer BIG Compromise”
- _____ (2020b), “P/C Insurers Back a Federal Pandemic Loss Fund But Not a Backstop Like TRIA”
- Insurance Services Office(2020), “Business Interruption: Limited Coverage for Certain Civil Authority Orders Relating to Coronavirus”
- Klein, R. W. and H. Weston(2020), “Government insurance for business interruption losses from pandemics: An evaluation of its feasibility and possible frameworks”, *Risk Management and Insurance Review*
- Kousky, C. and L. Shabman(2014), “Pricing Flood Insurance: How and Why the NFIP Differs from a Private Insurance Company”, Washington DC: Resources for the Future
- Lloyd’s(2020), “Supporting Global Recovery and Resilience for Customers and Economies”
-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2020), “Busines Interruption / Businessowner’s Policies(BOP)”

- National Law Review(2020), “COVID-19 Shutdowns, Related Litigation Put Pressure on Business Interruption Insurers”
-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2017), Annual Small Business Indicator Survey
- OECD(2020), “Responding to the COVID-19 and Pandemic Protection Gap in Insurance”
- Powers, T., Kaiser, A. J., and Phillips, Jr. R. D.(2020), “COVID-19: Insurance Litigation and Regulatory Responses”, ALSTON & BIRD
- Ralph, O.(2020), “Change of Status for Terror Insurer Poll Re Trigger Anger”, *The Financial Times*
- Richter, A. and T. C. Wilson(2020), “Covid-19: implications for insurer risk management and the insurability of pandemic risk”, *Geneva Risk Insurance Review*, 45, pp. 171~199
- Simpson A. G.(2020), “P/C Insurers Put a Price Tag on Uncovered Coronavirus Business Interruption Losses”, *Insurance Journal*
- The Hartford(2020), “COVID-19-Business Insurance”
- Travelers(2020), “COVID-19: Business Interruption General Information - Travelers Letter to New York Property Insurance Policyholders”
- U. 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2019), “Small Businesses Generate 44 Percent of U.S. Economic Activity”
- Wagner, Fred(1998), “Risk Securitization als alternatives Mittel des Risikotransfers von Versicherungsunternehmen”, *Zeitschrift für das Versicherungswissenschaft*, Nr. 4
- WISS and COMPANY(2020), “Covid-19: U.S smallest businesses hit disproportionately hard, missed out on stimulus”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연회비	제공자료	
법인 회원	₩300,000원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해외 보험동향 · KOREA INSURANCE INDUSTRY	영문 연차보고서 추가 제공
특별 회원	₩150,000원		
개인 회원	₩150,000원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 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775-9113 | 팩스 : (02)3775-9102



회비 납입 방법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 예금주: 보험연구원



자료 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자료실(02-3775-9113 | lsy@kiri.or.kr)

저자약력

한상용 Washington State University 경영학 박사 / 연구위원
(E-mail : syhan@kiri.or.kr)

문혜정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 / 연구원
(E-mail : hjmun@kiri.or.kr)

이슈보고서 2021-06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중단 리스크 관리에 대한 연구

발 행 일 2021년 4월
발 행 인 안 철 경
발 행 처 보험연구원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인 쇄 소 고려씨앤피

ISBN 979-11-89741-43-3
979-11-89741-37-2(세트)